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정 응



치안정책연구소
POLICE SCIENCE INSTITUTE



2016년
책임연구보고서

경찰서 경제팀의 운영성과
분석 및 수사체제 개선방안

정웅

목 차

제1장 서론	365
제2장 경제팀 운영성과 분석과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367
1. 조사 설계 및 설문	367
2. 분석 결과	373
3.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403
제3장 경제팀 수사체제의 개선방안	429
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0
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431
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432
4.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도출	434
제4장 결론	436
참고문헌	439

표 목 차

〈표 2-1〉 설문조사 설계 표: 경제팀의 운영성과 및 수사체제 분석	368
〈표 2-2〉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관서	373
〈표 2-3〉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부서	374
〈표 2-4〉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팀	374
〈표 2-5〉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역할·계급·연령·경력·재직연수	375
〈표 2-6〉 경제팀 운영성과: 책임 수사	377
〈표 2-7〉 경제팀 운영성과: 적극 수사	379
〈표 2-8〉 경제팀 운영성과: 수사 역량	381
〈표 2-9〉 경제팀 운영성과: 수사 만족도	383
〈표 2-10〉 수사과의 경제팀·지능팀 구분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85
〈표 2-11〉 최종별 경제팀 편제 유지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386
〈표 2-12〉 경제팀 적정 규모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387
〈표 2-13〉 경제팀·지능팀 간 단서별 업무 분장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	388
〈표 2-14〉 경제팀·지능팀 간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89
〈표 2-15〉 경제팀 분리·분과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0
〈표 2-16〉 경제과 최소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0
〈표 2-17〉 경제과 최대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1
〈표 2-18〉 경제과 내 수사민원상담팀 설치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2
〈표 2-19〉 경제과 내 수사지원팀의 정식 직제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	392
〈표 2-20〉 유치관리팀의 경제과 이관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3
〈표 2-21〉 추적수사팀 강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4
〈표 2-22〉 인지수사팀 신설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395

〈표 2-23〉 수사 인프라 개선 필요도	396
〈표 2-24〉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팀별 교차표	396
〈표 2-25〉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정	397
〈표 2-26〉 팀별 연간 업무 손실 내역	398
〈표 2-27〉 경제팀·지능팀의 역할별 업무 손실	399
〈표 2-28〉 경제팀·지능팀의 손실일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399
〈표 2-29〉 책임수사 시 경제팀장의 건당 업무량	402
〈표 2-30〉 수사 중 민원 발생률 및 경제팀장의 민원 해결 소요시간	403
〈표 2-31〉 경제팀 운영성과	404
〈표 2-32〉 경찰서 경제팀의 반려사건 비율	421
〈표 3-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430
〈표 3-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431
〈표 3-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432
〈표 4-1〉 경찰서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안	438

제1장 서론

한국 경제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라 범죄수익을 기대한 다양한 형태의 범죄 활동이 점증하는 추세 속에, 우리 경찰은 서민생활과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경제범죄에 대응하고자 일선 경찰서 경제팀을 확대하여 왔으며, 최근에는 서울 송파경찰서를 시작으로(2014. 7), 2016. 9월 현재 전국 5개 경찰관서에서 독립된 경제범죄수사과를 시범 운영 중에 있다.¹⁾

또한 그간 추진해 온 경제팀 수사 인력 증원 노력에 따라 경제팀 자체의 확대뿐만 아니라 경제팀의 분리·분과 및 경제범죄수사과의 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1년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이 수사주체로서 엄밀한 책임수사를 지향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경제팀의 단순한 인력 확대 또는 경제범죄수사과 증설에 앞서, 그간 운영되어 온 경제팀 그리고 시범 운영된 경제범죄수사과의 운영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향후 수사책임성이 반영된 효율적인 경제팀 수사체제의 개편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경찰서 경제팀의 그간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팀 단위 수사와 팀장 역할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책임수사의 대전제 아래, 팀 편제 구조, 적정 경제팀 규모 및 팀장 업무량, 업무분장 기준, 신설 경제범죄수사과의 적정 규모 등 향후 운용 가능한 경제팀 수사체제

1) 경제범죄수사과의 시범운영은 서울 송파서(2014. 7. 10)에서 시작되어, 2015. 2. 13일에는 서울 강남서, 서초서, 부산 부산진서 등 3개서로 확대되고, 2015. 6. 26일에는 서울 영등포서에서 시행되었다.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두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II장에서 경제팀의 운영성과와 수사체제 개선안을 모색하기 위한 설문조사 설계 및 결과 분석, 계량 모형 구축과 적정 업무량 추정을 시도한 후, III장에서는 앞선 분석과 추정을 토대로 경제팀 조직 및 운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수사체제의 개선안을 제시하고, 마지막 IV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요약 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제2장 경제팀 운영성과 분석과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1. 조사 설계 및 설문

가. 조사 설계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서는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체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선 현 시점에서 일선 현장 수사관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팀 확대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향후 경제팀의 팀 규모 및 업무분장, 분리·분과된 경제범죄수사과의 규모와 팀 배치 등 조직 및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사체제의 개편 내용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조사 설계는 아래 <표 2-1> 설문조사 설계 표에 보는 바와 같이 크게 I. 성과체감도의 측정을 위한 운영성과 분석 부분, II. 경제팀 조직 및 운영개선을 위한 수사체제 분석 부분의 두 범주로 설계되었다.

먼저 I. 운영성과 분석 부분은 그간 경제팀의 인력 확대와 활성화 추진에 따라 경제팀이 이른바 책임 수사 구축 및 적극적 수사 전개, 수사 역량 강화 및 수사만족도 제고 등과 같은 정책과제(성과요소)들을 얼마나 체감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

<표 2-1> 설문조사 설계 표: 경제팀의 운영성과 및 수사체제 분석

조사 범주	분석 요소	세부 내용(지표)	조사 목적
운영성과 분석	책임 수사	- 팀 단위 수사: 실질적 팀 단위 수사체제 구축	성과 체감도 측정
		- 팀장 수사지휘: 팀장의 수사지휘 역할 강화	
	적극 수사	- 추적수사: 기소중지자 검거, 현장 출동체제 유지	
		- 인지수사: 접수민원사건 이외에, 적극적 외근수사 전개	
	수사 역량	- 전문상담제: 접수사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제 운영	
		- 적정 사건보유량: 사건 접수/처리 중, 1인당 적정 사건 보유량 유지	
수사 만족도	- 국민 만족도: 생활경제침해 범죄에 대응한 대민 접점 수사 부서 운영 결과, 국민의 수사 만족도 향상		
	- 수사관 업무 만족도: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업무 수행 결과, 경제수사관으로서 업무 만족도 향상		
수사체제 분석	경제팀 편제	- 경제·지능 분리 구조: 경제팀 & 지능팀 구분의 유지와 각 팀의 전문화	경제팀 조직 및 운영 개선
		- 경제팀 편제 기준: 사건난이도·수사전문성을 고려, 최종별 팀 편제 유지	
	경제팀 규모	- 팀 적정 규모: 팀 단위 수사체제 정착 시, 적정 경제팀 규모	
		- 팀장 업무량: 수사지휘 역할 강화 시, 팀장의 (적정) 업무량	
	경제팀 업무 분장	- 분장 기준: 경제·지능팀 간 단서별 분장 원칙	
		- 탄력적 운용: 단서별 분장이 원칙이나, 예외적 운용	
	경제팀 분리, 분과	- 수사과로부터 경제팀 분리	
		- 경제과 설치 시 적정 규모: 분과 최소 인원 규모	
	경제과 각종 팀배치	- 수사민원상담팀(센터) 설치	
		- 수사지원팀(서무) 정식 직제화	
- 유치관리팀의 이관			
- 추적수사팀 강화: 기소중지자 검거 등 전담팀 강화			
수사 인프라	- 기획수사팀 설치: 탐문정보 등 외근·인지수사 전담팀 설치		
	- 조사 시설(업무/조사공간 분리 등) 확보 - 수사 장비(외근 비노출 차량 등) 확보 - 전산 시스템(경제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확보		
교육·연가	-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참석 - 개인 연가 실시	업무량 재산정	

이 같은 정책과제들을 반영한 경제팀 운영성과의 분석 요소에는 구체적으로 ① 책임 수사 ② 적극 수사, ③ 수사 역량, ④ 수사 만족도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나아가 운영성과를 구성하는 이러한 정책과제 또는 성과요소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적인 지표로서,

① 책임 수사의 경우에는 다시 ㉠ 실질적 팀 단위 수사체제²⁾의 구축, ㉡ 팀장의 수사지휘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② 적극 수사의 경우에는 ㉢ 기소중지자(체포영장발부자) 검거, 현장 출동체제 유지 등 추적수사, ㉣ 접수민원사건 이외에, 적극적 외근수사 전개와 같은 인지수사 강화를 세부 지표로 두었다,

③ 수사 역량의 경우 ㉤ 접수사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제³⁾ 운영 여부 등 전문상담제, ㉥ 사건 접수/처리 과정에서 1인당 적정 사건보유량 유지 등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④ 수사 만족도는 ㉦ 국민의 수사 만족도와 ㉧ 수사관의 업무 만족도 항목으로 나누었으며, 여기에는 각각 생활경제침해 범죄에 대응한 대민 접점 수사부서 운영에 따른 국민의 수사 만족도 향상 정도, 경제범죄에 대한 전문적 수사업무 수행에 따른 경제수사관으로서 업무 만족도 향상 정도를 포함하고자 하였다.

다음으로 II. 경제팀 조직 및 운영개선을 위한 수사체제 분석 부분은 우선 그간 운영되어 온 경제팀의 편제와 규모, 업무분장에 대한 개선점들을 검토해 본 후, 다음 단계로 경제팀의 (수사과로부터) 분리·분과, 경

2) 팀 단위 수사체제는, 팀장이 사건기록을 직접 검토·분석하여 합리적으로 수사지휘 하거나 구속영장신청서를 작성하는 등 직접 수사를 하면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팀장 중심의 수사 방법으로서, 팀장의 수사지휘·직접수사 없이 수사관 개인의 역량에 따라 검찰과의 의견 교환 등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수사관 개인 중심의 수사 방법에 반대되는 개념.

3) 전문상담제란, 팀장 상담제, 또는 수사팀과 별도의 수사민원상담실 운영 등 수사과 민원사건에 대한 전문적 상담 제도를 의미함.

제과 내의 각종 팀 배치 등을 구상해 보는 것으로 하였다. 이외에도 경제팀(경제과)의 운영에 가장 필요한 수사 인프라, 업무량 재산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교육·연가 시간 등도 조사 설계에 포함하였다.

이 같은 경제팀 편제 및 운영개선을 위한 수사체제 개선의 분석 요소를 다시 정리하면 구체적으로 ① 경제팀 편제 ② 경제팀 규모, ③ 경제팀 업무 분장, ④ 경제팀 분리·분과, ⑤ 경제과 내 각종 팀배치, ⑥ 수사 인프라, ⑦ 교육·연가 등이 포괄되어 있다.

본 연구는 경제팀 편제 및 운영개선을 위한 수사체제 개선이라는 위 분석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지표를 설계하였는바,

① 경제팀 편제의 경우에는 ㉠ 수사과 내 경제팀·지능팀 구분의 유지 여부, ㉡ 사건의 난이도 및 수사 전문성 확보를 고려한, 최종별 팀 편제 유지 여부라는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② 경제팀 규모의 경우에는 다시 ㉢ 팀 단위 수사체제 정착 시, 적정 경제팀 규모, ㉣ 수사지휘 역할 강화 시, 팀장의 (적정) 업무량을 세부 지표로 두었다,

③ 경제팀 업무 분장의 경우 ㉤ 경제·지능팀 간에 단서별 업무 분장 원칙⁴⁾ 등 업무 분장 기준, ㉥ (단서별) 분장 원칙 외에, 사안에 따른 예외적 업무 분장⁵⁾ 등 탄력적 운용 여부 등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④ 경제팀 분리·분과의 경우에는 ㉦ 기존 수사과로부터 경제팀 분리에 대한 타당성 ㉧ 분리·분과 시 신설된 경제과의 최소/최대 인원 등 경제과 적정 규모를 포함하였다.

4) 단서별 업무 분장의 원칙이란, 경제팀은 발생사건과 고소고발 민원사건을 담당하고, 지능팀은 인지사건을 담당하는 것을 의미함.

5) 탄력적 업무 분장이란, 단서별 분장 기준을 적용하되, 경제팀에서 첩보 입수한 인지사건은 경제팀에서 처리하고, 반면에 고소고발사건 이라도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지능팀에서 처리하는 등 예외적으로도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의미함.

⑤ 경제과 내에 각종 팀 배치의 경우에는 ㉠ 수사민원상담팀(센터) 설치 운영 여부 ㉡ 기존 수사과(미분과서) 또는 지능과(분과서)와 같은 수사지원팀(서무)의 정식 직제화 여부, ㉢ 수사과(미분과서) 또는 지능과(분과서) 유치관리팀의 경제과로의 이관, ㉣ 기소증지자 검거 전담 등 추적수사팀 강화, ㉤ 탐문첩보 등 외근·인지수사 전담팀의 신설 항목을 포함하였다.

이외에도 경제팀의 운영에 필수적인 수사 인프라로서 조사 시설(업무/조사공간 분리 등), 수사 장비(외근 비노출 차량 등), 전산 시스템(경제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등)에서의 확보 우선순위, 수사관의 업무량 및 소요 인력 재산정 과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수사관 교육·연가 시간 등도 조사 설계에 포괄하였다.

나. 설문 진행 및 데이터

본 연구의 설문조사는 경찰청 수사1계의 협조를 받아, 약 8일간(2016. 6. 13~20)에 걸쳐 실시되었다. 설문 대상은 먼저 각 지방청 및 그 하위 경찰서를 추출단위로 하고⁶⁾, 추출된 각 경찰관서에 소속된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을 응답 대상자로 정하였다. 응답방식은 해당 수사관에 대해 설계된 설문지 항목에 따라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6) 경제팀/지능팀 분과서의 경우, 조사대상에 서울 및 부산 지역 시범 5개서(서울지역 강남·송파·서초·영등포 경찰서, 부산지역 부산진 경찰서)가 전부 포함되어 경찰서 단위에서는 전수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외 경제팀/지능팀 미분과서의 경우는 사실상 전국의 전체 경찰서가 망라되기에, 조사대상에서 확률표본추출(probability sampling) 방법을 택하였다. 표본추출은 구체적으로 확률표본추출방법 중 층화추출(stratified sampling) 및 군집표본추출(cluster sampling) 방식을 택하여 7개 경찰서(서울 서부, 인천 연수, 대전 동부, 경기 수원서부, 경기 성남중원, 강원 춘천, 경남 창원중부)를 추출함으로써, 본 연구의 최종 설문대상 표본경찰관서는 총 12개서였다.

한편 응답 대상에는 수사관들의 연간 교육 참여, 연가 실시 등 연 단위 업무손실 추정의 필요성, 그리고 응답 대상자 중 경제팀 수사 미경험으로 인한 설문 문항 결측 방지를 위해 근무경력 1년 미만자는 제외하였다. 또한 경제/지능 수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서무 등 지원팀, 유치관 리팀, 사이버팀 직원은 본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전국 설문 대상 경찰관서 설문조사 실시 후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 들로부터 회수된 설문답지 중, 본 연구에서는 불성실 응답지 등을 제외 하고 최종적으로 268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외에 본 연구는 경제팀/경제팀장 업무량 추정에 필요한 연간 경제팀 최근 사건 처리 건수 추이, 임시반려 사건 수, 정식접수 사건 수 등의 통계치가 필요하였으며, 이러한 경제팀 관련 모수(population) 통계 는 경찰청 수사1과에서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2. 분석 결과

가. 기초 통계(소속 관서, 부서, 팀)

1) 소속 관서

〈표 2-2〉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관서

변수		N=268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소속	서울강남	42	15.7	15.7
	서울서부	10	3.7	19.4
	서울서초	21	7.8	27.2
	서울송파	29	10.8	38.1
	서울영등포	35	13.1	51.1
	부산진	32	11.9	63.1
	대전동부	11	4.1	67.2
	인천연수	13	4.9	72.0
	경기성남중원	21	7.8	79.9
	경기수원서부	16	6.0	85.8
	강원춘천	16	6.0	91.8
	경남창원중부	22	8.2	100.0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의 소속 관서를 보면, 경제팀·지능팀이 분과된 4개서(강남, 서초, 송파, 영등포)가 포함된 서울 지역이 51.1%로 가장 많았다.

한편 경제팀·지능팀이 분과된 5개서(서울 강남, 송파, 서초, 영등포, 부산진)의 경우 전체 응답자의 약 60%를 점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조사 목적이 경제팀의 운영성과 및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현재 경제팀이 분리·분과되어 시범 운영 중인 5개서가 조사에 포함되고, 또한 이들 경제범죄수사과(경제팀)의 인원이 타 경찰서보다는 매우 큰 규모를 가진데 기인한다.

2) 소속 부서

<표 2-3>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부서

변수		N=268명	퍼센트
분과 여부	경제범죄수사과	141	52.6
	지능범죄수사과	19	7.1
	수사과(미분과서)	108	40.3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의 소속 관서를 보면, 경제범죄수사과가 52.6%(141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수사과(미분과 경찰서)가 40.3%(108명)을 차지했다.

반면 지능범죄수사과가 7.1%(19명)에 불과한 것은, 지능팀이 경제팀에 비해 직원 자체가 적고, 그나마도 지능범죄수사과 내에 있는 유치관리팀, 사이버팀, 지원팀(서무) 등 지능팀 수사와 직접 관련이 적은 직원들이 본 조사에서 제외된 데에 따른 것이다.

3) 소속 팀

<표 2-4>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소속 팀

변수		N=268명	퍼센트
팀별	경제팀	215	80.2
	지능팀	53	19.8
	합계	268	100.0
분과 관련 세부 팀	경제과 경제팀	141	52.6
	수사과 경제팀	74	27.6
	지능과 지능팀	19	7.1
	수사과 지능팀	34	12.7
	합계	268	100.0

응답자들이 소속된 팀을 보면, 경제·지능의 분과 여부를 떠나, 전체적으로 경제팀이 약 80%(215명)를 차지하였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 응답 수사관의 경제팀·지능팀의 비율은 약 8:2 정도로 나타난다.

소속 팀을 분과 여부와 관련하여 보다 세부적인 팀별로 보면, 경제범죄수사과(이하 경제과) 경제팀이 52.6%(141명), 수사과 경제팀이 27.6%(74명)를 차지하고, 수사과 지능팀이 12.7%(34명), 지능범죄수사과(이하 지능과) 7.1%(19명)으로 나타났다.

나. 기초 통계(팀원)

〈표 2-5〉 응답 수사관의 기초통계: 역할·계급·연령·경력·재직연수

변수		N=268명	퍼센트	누적퍼센트
역할	팀원	223	83.2	83.2
	팀장	45	16.8	100.0
	합계	268	100.0	
계급	순경	1	.4	.4
	경장	39	14.6	14.9
	경사	74	27.6	42.5
	경위	126	47.0	89.6
	경감	28	10.4	100.0
	합계	268	100.0	
연령	20대	10	3.7	3.7
	30대	95	35.4	39.2
	40대	109	40.7	79.9
	50대	54	20.1	100.0
	합계	268	100.0	
부서경력	1년이상-3년미만	83	31.0	31.0
	3년이상-5년미만	55	20.5	51.5
	5년이상-10년미만	50	18.7	70.1
	10년이상	80	29.9	100.0
	합계	268	100.0	
재직연수	5년미만	20	7.5	7.5
	5년이상-10년미만	57	21.3	28.7
	10년이상-15년미만	52	19.4	48.1
	15년이상	139	51.9	100.0
	합계	268	100.0	

응답 수사관들의 역할·계급·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팀원이 83.2%(223명), 팀장은 16.8%(4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계급은 경위가 가장 많은 47%(126명), 그 다음으로 경사가 27.6%(74명)을 차지하였다. 연령은 40대가 가장 많은 40.7%(109명), 30대가 35.4%(95명)의 순이었다.

지능부서(경제팀 또는 지능팀) 수사관으로서 경력은 1년~3년 미만이 가장 많은 31%(83명)이고 그 다음으로는 오히려 10년 이상 부서 경력자가 29.9%(80명)으로 나타나 경제팀 또는 지능팀 경력에서 비교적 짧거나, 반대로 긴 양극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입직 후 경찰관으로서 총 재직연수는 15년 이상인 경우가 가장 많은 51.9%(139명)로 나타나, 최근에 경찰관 중 경제팀으로의 배치가 늘어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자들의 대표적인 수사관 像을 전체적으로 개관해 보면, 경제팀의 팀원으로서, 지능부서 경력이 3년 미만이지만 경찰관으로서 총 재직연수는 15년 이상인, 40대 경위이다.

다. 운영성과

경제팀 운영성과에는 앞서 보았듯이 ① 책임 수사 ② 적극 수사, ③ 수사 역량. ④ 수사 만족도 등이 그 분석 요소로 포괄된다.

1) 책임 수사

먼저 책임 수사의 경우 실질적 팀 단위 수사체제의 구축과 팀장의 수사지휘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그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해 “수사 기능 내 경제팀들이 실질적으로 팀 단위 수사체제로 운영되고 있는가”,

또 “수사기능 내 경제팀장들이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각 질문에 대해서는,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경제팀의 팀 단위 수사체제 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0). 소속된 팀을 기준으로 세부적으로 볼 때, 팀 단위 수사체제 운영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였으며(3.56), 이에 비해 미분과서인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에는 보통 이하의 저조한 평가(2.97)로 나타났다. 횡단면적 분석(cross-section analysis)을 통해서 볼 때, 이것은 경제팀 운영 과정 중 특히 경제과 분과가 팀 단위 수사체제 구축 및 운영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2-6〉 경제팀 운영성과: 책임 수사

세부팀		팀 단위 수사	팀장 역할
경제과(분과서) 경제팀	평균	3.56	3.61
	N	141	141
	표준편차	1.085	.893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	평균	2.97	3.55
	N	74	74
	표준편차	1.122	.981
지능과(분과서) 지능팀	평균	2.50	2.89
	N	18	19
	표준편차	.985	1.049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	평균	3.33	3.15
	N	33	33
	표준편차	1.137	.972
합계	평균	3.30	3.49
	N	266	267
	표준편차	1.139	.959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한편 경제팀의 팀 단위 수사를 바라보는 지능팀의 시각과 평가는, 미분과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경제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3.33), 분과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오히려 같은 관서 경제과 경제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50). 분과서의 경우 동급 부서로서 지능과의 경제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태도, 부서 간 업무 경쟁의 소지가 엿보인다.

경제팀 팀장들의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49). 소속된 팀을 세부적으로 볼 때, 팀장들의 수사지휘자로서의 역할 발휘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였으며(3.61), 미분과서인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에도 그에 못지않은 긍정적 평가(3.55)로 나타났다.

한편 수사지휘자로서 경제팀장의 역할을 바라보는 지능팀의 시각과 평가는,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의 경우 경제팀을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3.15), 수사과(분과서) 지능팀의 경우 팀 단위 수사체제 운영에 대한 평가에서와 같이 경제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89).

경제팀 운영성과를 책임 수사의 범주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실질적 팀 단위 수사체제의 구축과 팀장의 수사지휘 역할 강화라는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긍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고, 특히 실질적 팀 단위 수사체제에서는 경제과 경제팀이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에 비해 높은 평가를 보여 경제과 분과의 타당성을 보여준다.

2) 적극 수사

경제팀 운영성과 중, 적극 수사의 경우에는 기소중지자(체포영장발부자) 검거 및 현장 출동체제 유지 등 추적수사, 접수민원사건 외에 적극적 외근수사 전개 등 인지수사 강화를 세부 지표로 두었으며, 그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해 “수사기능 내 경제팀들이 기소중지자에 대한 외근추적 수사활동도 활성화

화하고 있는가”, 또 “수사기능 내 경제팀들이 인지사건 등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수사활동도 활성화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표 2-7> 경제팀 운영성과: 적극 수사

세부팀		추적 수사	인지 수사
경제과(분과서) 경제팀	평균	3.34	2.65
	N	140	141
	표준편차	1.168	1.021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	평균	3.46	2.78
	N	74	74
	표준편차	1.100	1.050
지능과(분과서) 지능팀	평균	2.74	2.16
	N	19	19
	표준편차	1.098	1.015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	평균	3.21	2.82
	N	33	33
	표준편차	1.053	.950
합계	평균	3.32	2.67
	N	266	267
	표준편차	1.138	1.027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팀의 추적 수사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32).⁷⁾ 다만 소속 팀을 기준으로 볼 때, 추적 수사 정도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수사과 경제팀이었으며

7) 추적 수사는 실제 분과서의 시행 전후 대비(시행일 前後 각 1년간 비교), 기소중지 송치율을 참고할 때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고소·고발사건 기소중지 송치율>

(단위: %)

	송파서	강남서	서초서	부산진서	영등포서
시행 전	9.2	15.2	9.74	5.6	9.04
시행 후	10.4	11.4	7.09	3.5	8.71
증감	1.2	-3.8	-2.65	-2.1	-0.33

출처: 경찰청 내부자료

(3.46), 다음으로 분과서인 경제과 경제팀으로 나타났다(3.34). 이는 적어도 횡단면적 비교를 통해서 볼 때, 경제과 분과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추적 수사의 성과는 가져오지 못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팀의 추적 수사 활동을 바라보는 지능팀의 시각과 평가는, 미분과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3.21), 분과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책임 수사에 대한 평가에서와 같이 경제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2.74).

경제팀의 외근 인지 수사 활동에 대하여는,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67). 소속된 팀을 세부적으로 볼 때,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2.65), 미분과서인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에 비해서도 낮은 평가(2.78)로 나타나 경제과 분과에도 불구하고 추적 수사에서의 같이 기대한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제팀 운영성과를 적극 수사의 범주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추적 수사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성과를 보인 반면, 인지 수사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경제팀 분과에도 불구하고 추적 수사와의 인지 수사 지표에서 모두 경제과 경제팀이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에 비해 낮은 평가를 보여 경제팀 운영 과정에서 경제과 분과의 운영성과가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3) 수사 역량

경제팀 운영성과 중, 수사 역량의 경우에는 접수사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제 운영, 1인당 적정 사건보유량 유지 등을 세부 지표로 두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해 “수사기능 내 경제팀들이 민원사건에 대해 전문상담제도(팀장상담, 민원상담실, 고소고발 즉일상담제 등)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는가”, 또 “수사기능 내 경제팀 수사관들이 1인당 적정한 수준의 사건

보유건수를 유지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표 2-8> 경제팀 운영성과: 수사 역량

세부팀		전문상담제 운영	적정 사건보유량 유지
경제과(분과서) 경제팀	평균	3.69	3.98
	N	140	141
	표준편차	.881	.626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	평균	3.66	3.78
	N	74	74
	표준편차	.955	.668
지능과(분과서) 지능팀	평균	3.00	3.37
	N	19	19
	표준편차	1.000	1.300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	평균	3.67	3.36
	N	33	33
	표준편차	.890	.822
합계	평균	3.63	3.81
	N	266	267
	표준편차	.923	.761

주: 위의 수사 역량 응답 값에서 전문상담제 운영 정도의 경우,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단, 사건보유 적정건수 유지의 경우,
5=(보유건수) 매우 많다, 4=많다, 3=적정하다, 2=대체로 적다, 1=매우 적다

경제팀의 전문상담제 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63). 소속 팀을 기준으로 볼 때, 이를 가장 높게 평가한 것은 경제과 경제팀이었으며(3.69), 다음으로 수사과 경제팀(3.66), 수사과 지능팀(3.67)이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경제팀이 전문적 사건상담에 있어 긍정적 운영성과를 보이고 있고, 특히 경제팀의 분과 이후에도 그 상담활동이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다.

한편 경제팀의 전문상담제 활동을 바라보는 지능팀의 시각과 평가는, 위에서 보듯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보통 이상으로 평가한 반면(3.37),

분과서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책임 수사에 대한 평가에서와 같이 그다지 높은 평가를 보이지 않고 있다(3.00).

경제팀의 1인당 사건보유량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많다고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81). 소속된 팀을 세부적으로 볼 때,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가 가장 많다고 느끼고 있었으며(3.98),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에도 비교적 많다고 보고 있었다(3.78).

경제팀 운영성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전문상담제 운영의 경우,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특히 경제팀의 분과 이후에도 그 상담활동이 지속 발전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경제팀의 1인당 사건보유량의 경우, 아직까지는 많다고 체감하고 있어 사건 보유건수 감축 등 개선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4) 수사 만족도

경제팀 운영성과 중, 수사 만족도의 경우 국민의 수사 만족도⁸⁾와 수사관의 업무 만족도를 세부 지표로 두었으며, 이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이 이를 어느 정도 체감하는지에 대해 “경제팀들이 민생 침해범죄 수사활동으로 국민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가”, 또 “경제팀 수사관들이 경제범죄 전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으로 질문하였다. 아울러 지능팀에 대하여도 “경제팀과 차별되는 인지·기획사건 전문 수사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족하고 있는가”라는 내용의 지능 수사업무 만족도를 질문하였다.⁹⁾

8) 본 연구의 수사 만족도 조사는 조사의 기술적·시기적 제약으로 인해 경제팀·지능팀 수사관만을 조사 대상으로 하였으며, 수사민원인을 조사대상에 직접 포함하지 못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9) 이러한 질문 구조는 경제팀, 지능팀 모두에게 묻는 형태이기 때문에, 만족도 평가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직접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상대 팀에 대한 간접적 평가가 이루어져, 각 팀의 상대적 만족도를 양자를 비교할 수 있는 복수적 비교평가 구조를 가진다.

〈표 2-9〉 경제팀 운영성과: 수사 만족도

세부팀		국민 수사 만족도	경제팀 업무 만족도	지능팀 업무 만족도
경제과(분과서) 경제팀	평균	3.55	3.05	3.38
	N	141	141	58
	표준편차	.890	1.016	.895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	평균	3.70	2.62	2.98
	N	74	74	46
	표준편차	.840	1.179	.954
지능과(분과서) 지능팀	평균	3.00	2.58	3.00
	N	19	19	19
	표준편차	1.000	.769	1.000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	평균	3.55	3.26	2.65
	N	33	31	34
	표준편차	.794	.965	1.252
합계	평균	3.55	2.92	3.06
	N	267	265	157
	표준편차	.884	1.065	1.039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경제팀의 수사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수사 만족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보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3.55). 다만 소속 팀을 기준으로 볼 때, 경제과 경제팀(3.55) 보다는 수사과 경제팀(3.70)으로 나타나, 경제팀 활동의 긍정적인 운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분과 이후 단계에서 보다 실질적인 국민 만족도 제고 노력이 필요함을 보이고 있다.

경제팀의 수사업무 만족도는 경제과 경제팀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 (3.05), 수사과 경제팀은 보통 이하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2.62). 다만, 경제팀의 분과 이후 단계에서 업무 만족도가 제고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지능팀의 경우에도 지능과 지능팀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3.00), 수사과 지능팀은 이 보다 낮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다(2.65).

흥미로운 점은 경제팀들이 분과 여부를 막론하고 자신들의 업무 만족도에 비해, 상대 지능팀 수사관들이 자신들 보다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대로 수사과 지능팀이 자신들의 업무 만족(2.65)에 비해, 상대 경제팀 수사관들이 자신들 보다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3.26)한 데서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

다만, 지능과 지능팀의 경우 자신들의 업무 만족(3.00)이 상대편 경제과 경제팀 수사관 업무 만족도(2.58) 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분과 이후 단계에서 수사업무 자체의 만족도에 따른 불만과 팀 간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과된 경제과 업무 만족도(3.05) 또는 지능과 업무 만족도(3.00)가 미분과된 수사과 경제팀 업무 만족도(2.62) 또는 수사과 지능팀 업무 만족도(2.65) 보다 높은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경제팀 운영성과를 전체 수사 만족도의 범주에서 볼 때, 국민 만족도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업무 만족도의 경우 상대팀이 자신들 보다 큰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과된 팀들이 미분과 된 팀들보다 높은 업무 만족도를 보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분과 이후 단계에서 수사업무 자체에 의한 불만과 부서 간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 수사체제 개선

경제팀 조직 및 운영개선을 위한 수사체제의 분석 요소에는 구체적으로 ① 경제팀 편제 ② 경제팀 규모, ③ 경제팀 업무 분장, ④ 경제팀 분

리·분과, ⑤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 ⑥ 수사 인프라, ⑦ 교육·연가 등이 포괄되어 있다.

1) 경제팀 편제 및 규모

본 연구는 경제팀의 조직 및 운영개선을 겨냥한 수사체제 분석 요소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 세부적인 지표를 설계하였는바, ① 경제팀 편제의 경우에는 경제팀·지능팀 구분의 유지 여부, 사건의 난이도 및 수사 전문성 확보를 고려한 죄종별 팀 편제 유지 여부라는 두 가지 지표를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먼저 “수사과 내 경제팀과 지능팀 구분의 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하였고, 그 응답은 유지 또는 폐지 척도로만 측정하였다.

수사과 내 경제팀·지능팀을 구분하는 편제에 대해서는 경제팀과 지능팀을 막론하고 모두 유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팀 수사관들은 82.0%가 유지 의견을 보였고, 지능팀의 경우에도 81.1%가 유지 의견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81.8%가 유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표 2-10> 수사과의 경제팀·지능팀 구분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팀 구분 의견		전체
		유지	폐지	
경제팀	빈도	173	38	211
	팀 중 %	82.0%	18.0%	100.0%
지능팀	빈도	43	10	53
	팀 중 %	81.1%	18.9%	100.0%
전체	빈도	216	48	264
	팀 중 %	81.8%	18.2%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다음으로 경제팀 수사관들에 대해 “경제팀들이 사건난이도·수사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최종별 팀 편제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여기에서는 매우 찬성, 찬성, 유보(모르겠다), 반대, 전혀 반대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2-11〉 최종별 경제팀 편제 유지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세부팀		최종별 경제팀 편제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과 경제팀	빈도	14	44	34	41	7	140
	%	10.0%	31.4%	24.3%	29.3%	5.0%	100.0%
수사과 경제팀	빈도	8	19	10	28	9	74
	%	10.8%	25.7%	13.5%	37.8%	12.2%	100.0%
전체	빈도	22	63	44	69	16	214
	%	10.3%	29.4%	20.6%	32.2%	7.5%	100.0%

최종별 팀 편제 유지에 대해 경제팀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39.7%(매우 찬성 10.3%+ 찬성 29.4%)로서 반대 의견 39.7%(반대 32.2%+ 전혀 반대 7.5%)와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41.4%(매우 찬성 10.0%+ 찬성 31.4%), 수사과 경제팀의 찬성 의견이 36.5%(매우 찬성 10.8%+ 찬성 25.7%)로 나타나, 분과서 경제팀의 경우 최종별 팀 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② 경제팀 규모의 경우에는, 팀 단위 수사체제 정착 시에 적정한 경제팀 규모 수준을 세부 지표로 두었다¹⁰⁾, 그에 따라 경제팀 수사관들에 대해 “팀장 수사지휘 역할이 강화된 팀 단위 수사체제의 정착을 전제할 때, 가장 적정한 경제팀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하였

10) 경제팀 규모에 대한 조사 중, 수사지휘 역할 강화를 전제한 팀장의 업무량 조사 부분은 적정 업무량의 수리적 모델 구축과 추정을 위해 뒷부분의 교육·연가(업무 손실) 조사 부분과 연결하여 함께 다루기로 한다.

고, 그 응답은 4~6명(소팀제), 7~9명(중팀제), 10명 이상(대팀제)의 항목으로 조사하였다.

<표 2-12> 경제팀 적정 규모에 대한 경제팀 의견 교차표

세부팀		팀 규모			전체
		4~6명 (소팀제)	7~9명 (중팀제)	10명 이상 (대팀제)	
경제과 경제팀	빈도	74	56	11	141
	%	52.5%	39.7%	7.8%	100.0%
수사과 경제팀	빈도	59	13	2	74
	%	79.7%	17.6%	2.7%	100.0%
전체	빈도	133	69	13	215
	%	61.9%	32.1%	6.0%	100.0%

경제팀의 규모에 대해 경제팀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4~6명의 소팀제가 적정한 것으로 보았으며(61.9%), 7~9명의 중팀제 경우 32.1%, 10명 이상 대팀제 경우는 6.0%에 불과하였다.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 경제과 경제팀 보다 소팀제 선택이 좀 더 많았으나, 수사과 및 경제과를 막론하고 과반 이상이 소팀제를 선택하고 있는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2) 경제팀 업무 분장 기준

경제팀 업무 분장의 경우 경제·지능팀 간에 단서별 업무 분장 원칙 등 업무 분장 기준, (단서별) 분장 원칙 외에 사안에 따른 예외적 업무 분장 등 탄력적 운용 여부 등을 세부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그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먼저 “고소고발사건 경제팀 담당, 인지사건 지능팀 담당이라는 운영 현실을 수용하여, 경제·지능 간 단서별로 업무를 분장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하였고, 다음으로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단서별 업무 분장 기준을 적용하되, 경제팀에서 첩보 입수한 인지사건의 경우 경

제팀에서 처리, 고소고발사건 이라도 장기간 수사를 요하는 사건의 경우 지능팀 접수 등 탄력적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여기에서는 매우 찬성, 찬성, 유보(모르겠다), 반대, 전혀 반대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2-13〉 경제팀·지능팀 간 단서별 업무 분장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단서별 업무 분장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20	79	56	48	12	215
	%	9.3%	36.7%	26.0%	22.3%	5.6%	100.0%
지능팀	빈도	10	21	9	12	1	53
	%	18.9%	39.6%	17.0%	22.6%	1.9%	100.0%
전체	빈도	30	100	65	60	13	268
	%	11.2%	37.3%	24.3%	22.4%	4.9%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단서별 업무 분장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48.5%(매우 찬성 11.2%+ 찬성 37.3%)로서 반대 의견 27.3%(반대 22.4%+ 전혀 반대 4.9%)에 비할 때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능팀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58.5%(매우 찬성 18.9%+ 찬성 39.6%)로서 경제팀 찬성 의견 46.0%(매우 찬성 9.3%+ 찬성 36.7%) 보다 높아서 오히려 지능팀이 단서별 업무 분장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59.7%(매우 찬성 11.9%+ 찬성 47.8%)로서 반대 의견 24.3%(반대 19.4%+ 전혀 반대 4.9%)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은 앞선 단서별 분장 원칙 찬성 비율(48.5%)보다도 높은 지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단서별 분장 원칙이 도입되더라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표 2-14〉 경제팀·지능팀 간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28	107	37	38	5	215
	%	13.0%	49.8%	17.2%	17.7%	2.3%	100.0%
지능팀	빈도	4	21	6	14	8	53
	%	7.5%	39.6%	11.3%	26.4%	15.1%	100.0%
전체	빈도	32	128	43	52	13	268
	%	11.9%	47.8%	16.0%	19.4%	4.9%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3) 경제팀 분리 및 신설 경제과 규모

경제팀 분리·분과의 경우에는 기존 수사과로부터 경제팀을 분리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또 분리·분과 시 신설된 경제과의 최소/최대 인원 등 경제과 적정 규모를 세부 항목으로 포함하였다.

그에 따라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먼저 “기존 경제팀이 수사과에서 분리되어, 독립된 (경제범죄)수사과로 운영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설문하였고, 여기에서는 매우 찬성, 찬성, 유보(모르겠다), 반대, 전혀 반대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분과 운영 시, 경제범죄수사과 최소/최대 인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그 응답은 최소 규모의 경우 20명부터, 30명, 40명, 50명 내외의 규모에서 조사하였으며, 최대 규모의 경우 40명부터, 50명, 60명, 70명 내외의 규모에서 조사하였다.¹¹⁾

11) 인원 규모 설문항목에서 답지 상 인원 수 범위(range)의 설정은 경제범죄수사과 시범 관서(5개)의 경제과, 지능과 인원 규모 실태, 일본 경찰의 수사과 과별 인원 사례(20~59명) 등을 참조하였다.

경제팀 분리·분과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64.9%(매우 찬성 17.7%+ 찬성 47.2%)로서 반대 의견 15.9%(반대 12.5%+ 전혀 반대 3.4%)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경제팀 수사관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71.2%(매우 찬성 18.4%+ 찬성 52.8%)에 달하여 기존 수사과로부터 분리와 경제과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표 2-15> 경제팀 분리·분과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경제팀 분리·분과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39	112	35	18	8	212
	%	18.4%	52.8%	16.5%	8.5%	3.8%	100.0%
지능팀	빈도	8	13	16	15	1	53
	%	15.1%	24.5%	30.2%	28.3%	1.9%	100.0%
전체	빈도	47	125	51	33	9	265
	%	17.7%	47.2%	19.2%	12.5%	3.4%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분과 운영 시, 경제과의 적정 규모에 대해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 대상으로 각각 “최소, 최대 인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물었으며, 최소 규모의 경우 경제팀 및 지능팀 전체에서 가장 많은 수사관들이 (36.6%), 30명 내외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었다.

<표 2-16> 경제과 최소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경제과 최소규모				전체
		20명 내외	30명 내외	40명 내외	50명 내외	
경제팀	빈도	27	68	60	50	205
	%	13.2%	33.2%	29.3%	24.4%	100.0%
지능팀	빈도	14	25	6	6	51
	%	27.5%	49.0%	11.8%	11.8%	100.0%
전체	빈도	41	93	66	56	256
	%	16.0%	36.3%	25.8%	21.9%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또한 최대 규모의 경우 경제팀은 50명 내외, 지능팀은 이보다 약간 적은 40명 내외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보였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가장 많은 비중의 수사관들이(34.7%), 50명 내외를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제과의 적정 최소/최대 인원 규모에 대한 적정 범위가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 선으로 나타나, 신설 경제과 설치 시에 약 40명 내외에서 경제과 인원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표 2-17> 경제과 최대 규모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경제과 최대 규모				전체
		40명 내외	50명 내외	60명 내외	70명 내외	
경제팀	빈도	47	68	37	49	201
	%	23.4%	33.8%	18.4%	24.4%	100.0%
지능팀	빈도	20	19	7	4	50
	%	40.0%	38.0%	14.0%	8.0%	100.0%
전체	빈도	67	87	44	53	251
	%	26.7%	34.7%	17.5%	21.1%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4) 경제과 내 팀 배치

기존 수사과로부터 분리된 경제과 내에 각종 팀 배치의 경우에는 5개 항목 즉, 수사민원상담팀(센터) 설치 운영 여부, 기존 수사과 또는 지능과(분과서)와 같은 수사지원팀(서무)의 정식 직제화 여부, 수사과 또는 지능과(분과서) 유치관리팀의 경제과로의 이관, 기소중지자 검거 전담 등 추적수사팀 강화, 탐문첩보 등 외근·인지수사 전담팀의 신설을 포함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에 대해 먼저 “접수단계 수사민원상담을 전담하는 상담팀(센터)의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

으로 설문하였고, 여기에서는 매우 찬성, 찬성, 유보(모르겠다), 반대, 전혀 반대의 항목으로 측정하였다.

<표 2-18> 경제과 내 수사민원상담팀 설치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민원상담팀 설치 운영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72	86	13	39	5	215
	%	33.5%	40.0%	6.0%	18.1%	2.3%	100.0%
지능팀	빈도	10	32	5	5	1	53
	%	18.9%	60.4%	9.4%	9.4%	1.9%	100.0%
전체	빈도	82	118	18	44	6	268
	%	30.6%	44.0%	6.7%	16.4%	2.2%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수사민원상담팀의 설치 운영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74.6%(매우 찬성 30.6%+ 찬성 44.0%)로서 반대 의견 18.6%(반대 16.4%+ 전혀 반대 2.2%)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본 항목은 유보(모르겠다) 의견 비중도 6.7%에 불과한 수준에서 경제팀과 지능팀 모두 찬성 의견을 보여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표 2-19> 경제과 내 수사지원팀의 정식 직제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수사지원팀 직제화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54	122	22	14	3	215
	%	25.1%	56.7%	10.2%	6.5%	1.4%	100.0%
지능팀	빈도	7	35	3	7	1	53
	%	13.2%	66.0%	5.7%	13.2%	1.9%	100.0%
전체	빈도	61	157	25	21	4	268
	%	22.8%	58.6%	9.3%	7.8%	1.5%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한편, <표 2-19>에서 보듯이 수사지원팀의 정식 직제화에 대해서도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81.4%(매우 찬성 22.8%+ 찬성 58.6%)로서 반대 의견 9.3%(반대 7.8%+ 전혀 반대 1.5%)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본 항목은 민원상담팀 설치에서와 같이 유보(모르겠다) 의견 비중이 9.3%로 낮은 수준에서 경제팀과 지능팀 모두 정식 직제화에 찬성 의견을 보임으로써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기존 수사과 또는 지능과(분과서)에 소속된 유치관리팀을 신설된 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19.4%(매우 찬성 3.7%+ 찬성 15.7%)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이 58.1%(반대 41.6%+ 전혀 반대 16.5%)에 달하여 이관을 굳이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근 직원 및 근무가 지능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과에서 관서내 유치관리를 담당하자는 논리도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 경제과가 야간 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지능과의 찬성 43.4%(매우 찬성 13.2%+ 찬성 30.2%) 입장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경제팀의 강한 반대 의사 63.4%(반대 46.3%, 전혀 반대 20.1%)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표 2-20> 유치관리팀의 경제과 이관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유치관리팀의 경제과 이관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3	26	43	99	43	214
	%	1.4%	12.1%	20.1%	46.3%	20.1%	100.0%
지능팀	빈도	7	16	17	12	1	53
	%	13.2%	30.2%	32.1%	22.6%	1.9%	100.0%
전체	빈도	10	42	60	111	44	267
	%	3.7%	15.7%	22.5%	41.6%	16.5%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기소중지자 검거 전담 등 추적수사팀 강화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69.4%(매우 찬성 16.8%+ 찬성 52.6%)로서 반대 의견 19.8%(반대 17.2%+ 전혀 반대 2.6%)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추적수사팀 강화는 당사자인 경제팀의 반대 의견이 22.4%(반대 19.1%+ 전혀 반대 3.3%)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팀 반대 의견 또한 9.4%(반대 9.4%+ 전혀 반대 0%)일 정도로 지능팀·경제팀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1> 추적수사팀 강화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추적수사팀의 강화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36	109	22	41	7	215
	%	16.7%	50.7%	10.2%	19.1%	3.3%	100.0%
지능팀	빈도	9	32	7	5	0	53
	%	17.0%	60.4%	13.2%	9.4%	.0%	100.0%
전체	빈도	45	141	29	46	7	268
	%	16.8%	52.6%	10.8%	17.2%	2.6%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탐문첩보 등 외근·인지수사 전담팀의 신설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32.8%(매우 찬성 5.6%+ 찬성 27.2%) 수준에 머물고, 반대 의견이 50.0%(반대 38.4%+ 전혀 반대 11.6%)에 이르러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지수사팀 신설은 당사자인 경제팀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이 53.6%(반대 40.0%+ 전혀 반대 13.5%)로서 지능팀 반대 35.9%(반대 32.1%+ 전혀 반대 3.8%) 보다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 이는 추적수사팀 강화의 경우 경제팀과 지능팀이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인지수사는 업무 분장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 지능팀의 본령에 속

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과 신설을 통해 경제팀이 탐문정보 등 외근·인 지수사를 활성화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담팀의 수준으로 정착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판단된다.

〈표 2-22〉 인지수사팀 신설에 대한 팀별 의견 교차표

세부팀		인지수사팀의 신설					전체
		매우 찬성	찬성	유보	반대	전혀 반대	
경제팀	빈도	11	53	36	86	29	215
	%	5.1%	24.7%	16.7%	40.0%	13.5%	100.0%
지능팀	빈도	4	20	10	17	2	53
	%	7.5%	37.7%	18.9%	32.1%	3.8%	100.0%
전체	빈도	15	73	46	103	31	268
	%	5.6%	27.2%	17.2%	38.4%	11.6%	100.0%

주: 경제팀은 경제과 및 수사과의 경제팀을 모두 포함, 지능팀은 지능과 및 수사과의 지능팀을 모두 포함.

5) 수사 인프라 개선

수사 인프라 개선의 경우에는 경제팀 운영에 필수적인 수사 인프라로서 조사 시설(업무와 조사공간 분리 등), 수사 장비(외근 비노출 차량 등), 전산 시스템(경제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등) 확보에서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였다.

그에 따라 경제팀 수사관들에 대해 먼저 “시설, 장비, 전산시스템 등 물적 인프라 개선의 필요도”를 묻고, 이어서 각 인프라들에 대한 확보 우선 순위를 묻는 내용으로 설문하였다. 물적 인프라 개선 필요도에 대해서는,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등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수사 인프라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경제과 경제팀은 4.34,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는 좀 더 높은 4.49, 두 경제팀 모두를 합한

평균은 4.39의 값을 보임으로써, 현 수준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23〉 수사 인프라 개선 필요도

세부팀	평균	N	표준편차
경제과(분과서) 경제팀	4.34	140	.792
수사과(미분과서) 경제팀	4.49	74	.625
합계	4.39	214	.741

주: 위의 항목별 응답 값에서,

5=매우 필요하다, 4=대체로 필요하다, 3=보통, 2=필요하지 않다, 1=전혀 필요하지 않다

또한 수사 인프라 중 어느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경제과 경제팀의 67.4%, 수사과 경제팀의 70.8%가 업무공간과 조사 공간 분리 등 조사 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는 경제팀의 24.1%, 수사과 경제팀의 19.4%가 외근 비노출 차량 등 수사 장비를 지적하였고, 이어 전산 시스템(경제범죄 데이터베이스 구축·공유 등)도 개선을 피력하였다.

〈표 2-24〉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팀별 교차표

세부팀		개선 우선 부분			전체
		조사 시설	수사 장비	전산 시스템	
경제과 경제팀	빈도	95	34	12	141
	팀 중 %	67.4%	24.1%	8.5%	100.0%
수사과 경제팀	빈도	51	14	7	72
	팀 중 %	70.8%	19.4%	9.7%	100.0%
전체	빈도	146	48	19	213
	팀 중 %	68.5%	22.5%	8.9%	100.0%

한편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팀별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값(0.623)의 유의확률(P)은 0.732로서, 위의 표에서 나타난 경제과 경제팀과 수사과 경제팀 간의 비중 값들에 유의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개선되어야 할 인프라의 우선 순위는 어느 팀이든 관계없이 조사 시설, 수사 장비, 전산 시스템의 순이라고 할 수 있다.

<표 2-25>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 부분에 대한 교차분석에서 카이제곱 검정

	값	자유도	점근 유의확률 (양측검정)
Pearson 카이제곱	.623 ^a	2	.732
우도비	.633	2	.729
선형 대 선형결합	.057	1	.811
유효 케이스 수	213		

a. 0 셀 (.0%)은(는) 5보다 작은 기대 빈도를 가지는 셀. 최소 기대빈도는 6.42.

6) 교육 및 연가(정상적 업무 손실)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및 적정 팀 규모의 추정에는 수사관의 사건 처리 업무량 및 소요 인력이 산정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는 수사관의 업무 수행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업무 손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즉 적정 업무량 추정에서는 수사관의 기본적인 可用 업무 시간 외에도 수사역량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참석, 개인 연가 실시 등 정상적인 업무 손실이 반영되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 재산정에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수사관의 연간 교육 및 연가 시간 등을 조사 설계에 포괄하였다.

팀별 연간 업무 손실 내역을 보면 우선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 직무교육 약 4.6일, 연가 10일 등 손실일이 약 14.6일로 나타났으며,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는 경제과 보다 약간 많은 약 16.2일로 나타났다.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손실일은 약 14.1일로서 경제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지능과 지능팀의 경우는 교육이나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손실일이 11.7일에 머물고 있다.

<표 2-26> 팀별 연간 업무 손실 내역

세부팀		① 직무교육(日)	② 연가(日)	③=①+② 손실시간(日)	손실시간(分)
경제과 경제팀	평균	4,559	10,036	14,595	7005,652
	N	141	141	141	141
	표준편차	5,3817	4,5014	7,7362	3713,3965
수사과 경제팀	평균	5,143	11,074	16,217	7784,189
	N	74	74	74	74
	표준편차	6,0907	3,8246	7,3431	3524,7068
지능과 지능팀	평균	3,368	8,368	11,737	5633,684
	N	19	19	19	19
	표준편차	3,9046	3,9046	5,0755	2436,2179
수사과 지능팀	평균	5,673	8,441	14,114	6774,897
	N	34	34	34	34
	표준편차	6,8774	4,3219	8,5822	4119,4494
합계	평균	4,777	10,002	14,779	7094,080
	N	268	268	268	268
	표준편차	5,7016	4,3336	7,6335	3664,0746

주: 1) 업무 손실=직무교육+연가, 2015년 연간 기준.

2) 손실시간(分)=손실시간(日)×8시간×60분.

경제팀과 지능팀 수사관의 역할별로 업무 손실을 살펴보면, 경제팀 팀원이 약 15.1일, 팀장이 약 15.2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지능팀의 경우에도 팀원이 약 13.4일, 팀장이 약 12.4일로 큰 차이는 없었다. 다만, 전체적으로 경제팀과 지능팀 간에는 경제팀 전체 손실일 15.2일, 지능팀 전체 손실 13.3일로 경제팀의 손실 값이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표 2-27> 경제팀·지능팀의 역할별 업무 손실

팀	역할	평균(日)	평균(分)	N	표준편차(分)
경제팀	팀원	15.147	7270.556	177	3567.0711
	팀장	15.183	7287.857	38	4117.8780
	합계	15.153	7273.614	215	3660.1151
지능팀	팀원	13.389	6426.663	46	3705.5424
	팀장	12.429	5965.714	7	3253.8329
	합계	13.262	6365.783	53	3623.4080
합계	팀원	14.784	7096.479	223	3603.8781
	팀장	14.755	7082.190	45	3992.2185
	합계	14.779	7094.080	268	3664.0746

이처럼 경제팀과 지능팀의 손실일에서 경제팀 손실일 값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는 있으나, Levene의 등분산이 가정된 두 집단의 t-test 결과를 보면, t-value=1.620, 95% 신뢰수준에서 p-value가 0.106으로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2-28> 경제팀·지능팀의 손실일에 대한 독립표본 검정

	Levene의 등분산 검정		평균의 동일성에 대한 t-검정						
	F	유의 확률	t	자유도	유의확률 (양쪽)	평균차	차이의 표준오차	차이의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등분산 가정	.091	.763	1.620	266	.106	1.8913	1.1671	-.4067	4.1893
등분산 가정 않음			1.630	80.216	.107	1.8913	1.1600	-.4171	4.1997

7) 경제팀장 업무량

경제팀장들이 실질적 수사지휘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수사체제 하에서는 팀장들이 개별 사건처리 지휘에 보다 많은 시간을 투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사건처리 업무 프로세스를 기준으로 할 때, 접수단계-진행단계-종결단계 등 사건처리 전 과정에서 팀장이 수행해야 할 다양한 업무량이 발생한다.¹²⁾

본 연구는 이러한 팀장의 강화된 수사지휘 역할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업무 측정 요소를 설계하였다.

(접수단계) : 민원상담 및 피해구제안내(상담사건), 기초조사(비상담사건), 과장보고 및 배당건의

(진행단계) : 수사지휘서 작성, 수사민원 해결

(종결단계) : 송치 전 수사기록 재검토 및 수사보완 지휘,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위 연구 설계에 따라 팀장 업무량 중, 기존 연구(정웅, 2012)에서 추정하였던 시간 즉 사건접수 초기단계에서 상담(반려) 시간(46.6분), 수사진행단계에서 수사지휘 시간(53.1분)¹³⁾ 등을 제외하고, 경제팀장들을 대상으로 하여 책임수사 전제 시에 예상되는 단계별 업무량을 조사하였다.

12) 책임수사체제에서 경제팀장의 역할 강화 시, 팀장의 표준 역할에는 적어도 단계별로 1) 사건 접수단계: 방문민원 상담 및 우편접수민원 분석, 팀장 사건배당 및 KICS 정수사관 등록, 2) 수사 진행단계: 수사지휘서(KICS) 작성, 중요사건·강제수사사건 등에 대한 수사지휘 강화, 사건 이송 서류의 직접 작성, 수사민원 처리 및 보고서·보도자료 직접 작성, 3) 수사 종결단계: 송치전 수사결과보고서 등 수사기록 정밀 검토 및 수사보완 지휘, 4) 송치 후 단계: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 결과 확인(KICS), 불일치 사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방안 마련 등 많은 업무가 포괄된다. 경찰청 수사국, “경제범죄 수사책임성 제고를 위한 경제팀장 역할강화 시범운영 계획”, 2016. 5.

13) 정웅의 연구(2012)에서 수사지휘 (53.1분)는 구체적으로 ① 팀장의 서류검토, ② 수사방향 제시, ③ 외근시 동행 등 기초적인 지휘업무만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우선 ① 접수단계 업무시간으로서 팀장의 안내, 보고, 배당 건의에 소요된 1건당 시간을 조사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하였던 상담(반려) 시간과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민원상담을 초기 사건상담, 그 다음 피해구제 안내 또는 보고·배당 단계로 구분하고, 앞부분의 초기 사건상담을 제외한 뒷부분의 피해회복제도 안내(반려사건), 또는 과장 보고 및 배당건의(정식접수사건)에 소요된 1건당 시간만을 질문하였다.

두 번째 진행단계 중 ② 수사지휘서 작성 업무에서는 KICS 상 등록과 수사지휘서 작성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하였으며, 그 다음으로 ③ 민원처리 업무에서는 수사관 교체요청 등 수사 중 민원발생의 비율(전체 접수사건 대비)과 건당 민원해결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마지막 종결단계 중 ④ 수사기록 재검토 및 수사보완 지휘 업무에서는 사건송치 전, 공판을 염두한 사건기록 재검토와 수사미진 시 보완 지휘에 소요된 시간을 구하고, ⑤ 팀장이 직접 수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요시간을 조사하였다. 종결 단계에서도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하였던 서류검토 소요시간과 중복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수사진행 단계 등 이전 단계에서의 서류검토 시간은 빼고, 종결 단계에서 위의 해당된 서류업무만을 응답하도록 하였다.

책임수사 전제 시에 경제팀장의 단계별 업무량을 조사한 결과, 경제과 경제팀장의 경우 정식접수사건 1건당 과장 보고 및 배당건의가 약 37분, 수사지휘서 작성 약 89.8분,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2.4분. 송치 전 수사기록 재검토 및 수사보완 지휘가 106.7분, 수사결과보고서 작성 178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여기에 팀장의 (초기) 상담 시간 46.6분, 수사지휘 53.1분¹⁴⁾을 더하면 경제과 경제팀장의 1건당 업무량(정식

14) 정웅의 연구(2012)에서 팀장의 상담(반려) 시간 추정에는 피해구제 안내 등을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상담(반려) 시간을 본 연구에서는 민원상담 중 초기 상담시간으로 설정하였다.

접수사건 기준)은 512.5분, 수사과 경제팀장은 465.6분, 전체 경제팀장 평균은 492.7분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식접수사건이 아닌, 상담반려사건의 경우는 초기 상담 46.6분, 피해구제 안내 평균 35.8분으로 전체 경제팀장의 반려사건 업무량은 평균 82.4분으로 나타났다.

<표 2-29> 책임수사 시 경제팀장의 건당 업무량

(단위: 분)

분과		①	②	③	④	⑤	⑥
		구제안내 or 과장보고, 배당건의	수사 지휘서 작성	민원 처리 소요시간	수사기록 재검토, 보완 지휘	수사결과 보고서 작성	팀장의 1건당 업무량
경제과 경제팀	평균	36,956	89,759	2,3859	106,684	178,017	512,5022
	N	22	22	22	22	22	22
	SD	10,1609	40,3603	1,76587	51,0059	90,8552	148,66260
수사과 경제팀	평균	34,110	86,140	2,0387	96,397	148,182	465,5671
	N	16	16	16	16	16	16
	SD	10,2075	32,6238	1,57395	36,6950	36,7195	63,98317
합계	평균	35,758	88,235	2,2397	102,353	165,455	492,7401
	N	38	38	38	38	38	38
	SD	10,1423	36,8687	1,67462	45,2655	73,8549	121,46910

주: 1) 팀장 건당 업무량=⑥=①+②+③+④+⑤+98.7분(초기 상담 46.6분+수사지휘 53.1분)
 2) 팀장의 초기 상담 46.6분+수사지휘 53.1분은 정웅(2012)의 추정 결과를 참조.

한편 수사 진행 중 중 민원처리 소요시간이 전체 경제팀장 평균 2.2분이 추정된 것은 본 조사에서 수사 중 민원 발생률 및 경제팀장의 민원 해결 소요시간(分)으로부터 산출된 것이다. 즉 ③ 팀장 1건당 민원해결 소요시간은 전체 정식접수사건 중 민원발생비율(%)에 민원 발생사건 1건당 해결 소요시간(分)을 적용하여 측정되었다.

조사 결과, 민원 발생사건 1건당 해결 소요시간이 평균 132.7분으로 나타났으나, 민원발생률은 전체 사건 중 1.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식접수사건 1건당 평균 민원처리 소요시간의 최종 값은 매우 작게 측정된다.

〈표 2-30〉 수사 중 민원 발생률 및 경제팀장의 민원 해결 소요시간

(단위: 분)

		민원 발생률(%)	민원 발생사건 1건당 해결 소요시간(分)
경제과 경제팀	평균	1,6980	140,826
	N	22	22
	SD	.95570	89,2678
수사과 경제팀	평균	1,6678	121,591
	N	16	16
	SD	1,19258	58,1283
합계	평균	1,6853	132,727
	N	38	38
	SD	1,04652	77,3644

주: 1) 민원발생률= 전체 접수사건 중, 수사관 교체요청 등 민원발생 비율.

2) 팀장 1건당 민원해결 소요시간= 민원발생률(%)×0.01(백분률값 환산)×민원해결 건당 소요시간.

3.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모색

가. 경제팀 운영성과의 시사점

앞서 경제팀 운영성과 조사에서는 ① 책임 수사 ② 적극 수사, ③ 수사 역량, ④ 수사 만족도 등을 분석 요소 또는 범주로 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 경제팀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성과 지표들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책임 수사에서 팀 단위 수사(3.30) 및 팀장 수사지휘 역할(3.49), 적극 수사에서 추적 수사 활성화(3.32), 수사 역량에서 전문 상담제 운영(3.63), 수사 만족도 중에서 국민 만족도(3.55) 등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추적 수사에 비해 인지 수사 부분에 대한 평가(2.67)는 보통 이하 부정적으로 나타나, 경제팀이 지능팀과 같은 외근 인지 수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전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1인당 적정 사건보유에서도 아직까지는 보유건수가 다소 많다고 체감하고 있어(3.81), 보유건수의 감축을 통한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경제팀의 수사업무 만족도는 경제과 경제팀이 보통 수준에 머물고 (3.05), 수사과 경제팀은 보통 이하 낮은 상태로 나타났다(2.62).

<표 2-31> 경제팀 운영성과

세부팀	책임 수사		적극 수사		수사 역량		수사 만족도		
	팀단위 수사	팀장 역할	추적 수사	인지 수사	전문 상담	사건 보유	국민 만족	경제팀 만족	지능팀 만족
경제과 경제팀	3.56	3.61	3.34	2.65	3.69	3.98	3.55	3.05	3.38
수사과 경제팀	2.97	3.55	3.46	2.78	3.66	3.78	3.70	2.62	2.98
지능과 지능팀	2.50	2.89	2.74	2.16	3.00	3.37	3.00	2.58	3.00
수사과 지능팀	3.33	3.15	3.21	2.82	3.67	3.36	3.55	3.26	2.65
합계	3.30	3.49	3.32	2.67	3.63	3.81	3.55	2.92	3.06

주: 위의 경제팀 운영성과는 5점 척도 측정 결과에 따른 평균값,
5=매우 그렇다, 4=대체로 그렇다, 3=보통, 2=그렇지 않다, 1=전혀 그렇지 않다
단, 사건보유 (적정건수 유지)의 경우,
5=(보유건수) 매우 많다, 4=많다, 3=적정하다, 2=대체로 적다. 1=매우 적다

한편 경제팀의 소속 관서를 기준으로 볼 때, 경제과 경제팀이 수사과 경제팀에 비하여 팀 단위 수사 및 팀장 수사지휘 역할, 전문상담제 운영, 경제팀의 수사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팀의 분과 이후 단계에서 성과 지표가 개선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만, 경제과 경제팀의 추적 수사 활성화 체감도(3.34) 및 국민 만족 체감도(3.55)는 긍정적 수준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수사과 경제팀의 추적

수사 활성화 체감도(3.46)와 국민 만족 체감도(3.70)에 비할 때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팀의 분과 이후에도 이 부분의 개선 노력에 특히 주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팀 운영성과에 대한 지능과 지능팀의 평가는, 책임 수사와 적극 수사, 수사 역량(전문상담제 운영) 수사 만족도(국민 만족) 등에서 전반적으로 보통 이하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또한 수사과(미분과서) 지능팀 보다는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평가를 내리고 있어서, 분과서 지능과의 경우 동급 부서인 경제과에 대한 엄정한 평가 태도, 부서 간 업무 경쟁의 소지가 엿보인다.

아울러 업무 만족도의 경우 경제팀은 분과·미분과 여부를 막론하고 상대 지능팀이 자신들 보다 낮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반대로 수사과 지능팀은 자신들의 업무 만족(2.65)에 비해, 상대 경제팀 수사관들이 자신들 보다 더 높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 있어 팀 간 불만의 소지가 발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과(분과서) 지능팀의 경우에는 자신들의 업무 만족(3.00)이 상대편 경제과 경제팀 수사관 업무 만족도(2.58) 보다 나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여 분과 이후 단계에서 수사업무에 따른 불만과 부서 간 갈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분과된 경제과 경제팀의 만족도(3.05)와 지능과 지능팀의 만족도(3.00) 모두가 미분과 된 수사과 경제팀(2.62)과 지능팀(2.65)의 업무 불만 상태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과 운영 과정에서 업무 자체에 대한 팀 내 불만과 부서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경제팀 운영성과의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책임 수사 중 팀 단위 수사 및 팀장 수사지휘 역할 지표, 적극 수사 중 추적 수사 활성화 지표, 수사 역량 중 전문 상담제 운영 지표, 수사 만족도 중 국민 만족도 지표 등이 보통 이상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경제팀의 지속적 운영에 대한 타당성을 시사.
- ② 적극 수사 중 인지 수사 성과는 보통 이하 부정적으로 나타나, 경제팀이 인지 수사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로 발전하는 데 한계를 시사.
- ③ 수사 역량 중 1인당 사건보유는 다소 많다고 평가되어 보유건수의 감축을 통한 개선 시사.
- ④ 경제과 경제팀이 수사과 경제팀에 비하여 팀 단위 수사 및 팀장 수사지휘 역할, 전문상담제 운영, 경제팀의 수사업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팀의 분과에 대한 타당성을 시사.
- ⑤ 단, 경제팀은 지능팀이 자신들 보다 높은 업무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지능팀 역시 경제팀 수사관들이 자신들 보다 높은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팀 간 갈등의 소지가 있으나, 분과서의 경제팀 및 지능팀 업무만족도가 미분과된 수사과 경제팀 및 지능팀의 업무 불만 상태를 극복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분과 운영 과정에서 팀 내 불만과 부서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

나. 수사체제 개선의 착안점

본 연구에서 경제팀 조직 및 운영개선을 위해 조사된 수사체제의 분석 요소는 ① 경제팀 편제 ② 경제팀 규모, ③ 경제팀 업무 분장, ④ 경제팀 분리·분과, ⑤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 ⑥ 수사 인프라, ⑦ 교육·연가 등이었다.

우선 ① 경제팀 편제 관련, 경제팀·지능팀을 구분하는 편제에 대해서는 경제팀과 지능팀 모두 구분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제팀 수사관들은 82.0%가 현행 구분 유지 의견을 보였고, 지능팀의 경우에도 81.1%가 구분 유지 의견을 나타내 전체적으로 81.8%가 구분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팀 내에 최종별 편제에 대해서 경제팀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과 반대 의견이 39.7%로서 같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제과 경제팀은 찬성 의견이 41.4%, 수사과 경제팀은 찬성 의견이 36.5%로 나타나, 분과서 경제팀의 경우 최종별 팀 편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② 경제팀의 규모 관련, 경제팀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4~6명의 소팀제가 적절한 것으로 보았으며(61.9%), 10명 이상 대팀제 경우는 6.0%에 불과하였다.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 경제과 경제팀 보다 소팀제 선택이 좀 더 많았으나, 수사과 및 경제과를 막론하고 과반 이상이 소팀제를 선택하고 있는 양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③ 경제팀 업무 분장 관련, 경제·지능팀 간에 단서별 업무 분장 원칙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48.5%로서 반대 의견 27.1%에 비할 때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지능팀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58.5%로서 경제팀 찬성 의견 46.0%보다 높아서 오히려 지능팀이 단서별 업무 분장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59.7%로서 반대 의견 24.3%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업무 분장의 탄력적 운용은 앞선 단서별 분장 원칙 찬성 비율(48.5%)보다도 높은 지지 비율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단서별 분장 원칙의 도입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④ 경제팀 분리·분과 관련,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64.9%로서 반대 의견 15.9%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경제팀 수사관의 경우에 찬성 의견이 71.2%에 달하여 기존 수사과로부터 분리와 경제과의 신설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경제과의 적정 규모에 대해 현장 경제팀 및 지능팀 수사관들은 최소 규모의 경우 가장 많은 수사관들이(36.6%), 30명 내외를 적정 규모로 보고 있었다. 또한 최대 규모의 경우 가장 많은 수사관들이(34.7%), 50명 내외를 적정한 것으로 보았다.

경제과의 인원 규모에 대한 범위가 최소 30명에서 최대 50명 선으로 나타나, 신설 경제과 설치 시에 약 40명 내외에서 경제과 인원이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⑤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 관련, 수사민원상담팀의 설치 운영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74.6%로서 반대 의견 18.6%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특히 본 항목은 유보(모르겠다) 의견 비중이 6.7%에 불과한 수준에서 경제팀과 지능팀 모두 찬성 의견을 보여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수사지원팀의 정식 직제화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81.4%로서 반대 의견 9.3%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본 항목은 민원상담팀 설치에서와 같이 유보(모르겠다) 의견 비중이 9.3%로 낮은 수준에서 경제팀과 지능팀 모두 찬성 의견을 보임으로써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유치관리팀을 신설된 경제과로 이관하는 것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찬성 의견이 19.4%에 불과한 반면, 반대 의견이 58.1%에 달하여 실익이 없는 이관을 굳이 검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내근 직원

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제과에서 유치관리를 담당하자는 논리도 제기되고는 있으나, 현재 경제과가 야간 당직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현실, 그리고 당사자인 경제팀의 강한 반대 의견(찬성 13.5%, 반대 63.4%)를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추적수사팀 강화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69.4%로서 반대 의견 18.6%에 비할 때 매우 높은 지지 의견을 보였다. 추적수사팀 강화는 당사자인 경제팀의 반대 의견이 22.4% 수준에 불과하고, 지능팀 반대 의견 또한 9.4%일 정도로 모두 지능팀·경제팀이 모두 공감하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수사 전담팀의 신설에 대해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볼 때 찬성 의견이 33.8% 수준에 머물고, 반대 의견이 50.0%에 이르러 부정적인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특히 인지수사팀 신설은 당사자인 경제팀에서 나오는 반대 의견이 53.5%로서 지능팀 반대 35.9% 보다도 더 강한 반대 입장에 있다. 이는 추적수사팀 강화의 경우 경제팀과 지능팀이 모두 찬성 의견이 우세를 보인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인지수사는 업무 분장의 시각에서 볼 때, 사실상 지능팀의 본령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경제과 신설을 통해 경제팀이 탐문정보 등 외근·인지수사를 활성화 하더라도 이를 전담팀의 수준으로 정착시키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⑥ 수사 인프라 관련, 수사 인프라 개선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에 대하여 경제팀 수사관들은 전체적으로 그 필요도 값을 평균 4.39로 나타냄으로써(5=매우 필요, 4=필요), 현 수준에서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사 인프라 중 어느 분야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하여 경제과 경제팀의 67.4%, 수사과 경제팀의 70.8%가 업무공간과 조사공간

분리 등 조사 시설의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지적하였다. 다음으로 는 경제팀의 24.1%, 수사과 경제팀의 19.4%가 외근 비노출 차량 등 수사 장비 개선을 피력하였다.

⑦ 교육·연가 관련, 팀별 업무 손실 내역을 보면 우선 경제과 경제팀의 경우, 직무교육 약 4.6일, 연가 10일 등 손실일이 약 14.6일로 나타났다. 수사과 경제팀의 경우는 경제과 보다 약간 많은 약 16.2일로 나타났다. 수사과 지능팀의 경우 손실일은 약 14.8일로서 경제팀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지능과 지능팀의 경우는 교육이나 연가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손실일이 11.7일에 머물고 있다.

전체적으로 경제팀과 지능팀 간에는 경제팀 전체 손실일 15.2일, 지능팀 전체 손실 13.3일로 경제팀의 손실 값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으나, 통계분석 상으로는 팀 간 손실일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Levene 등분산 가정 t-test, t-value=1.620, $\alpha=5\%$, p-value=0.106).

이상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경제팀 조직 및 운영개선의 착안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 팀 편제에서,

- 수사 기능 내 경제팀·지능팀 구분을 유지
- 경제팀 내 죄종별 편제를 유지

② 경제팀 규모에서,

- 4~6명의 소팀제로 편성

③ 경제팀 업무 분장에서,

- 경제팀·지능팀 간 단서별 업무 분장 원칙 도입
- 단서별 분장 원칙의 도입 시, 탄력적인 운용을 반드시 병행

④ 경제팀 분리·분과에서,

- 인력 여건 등에 맞추어 경제팀을 분리, 경제과 신설을 추진
- 신설 경제과 규모는 40명 내외가 적정

⑤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에서,

- 민원상담팀은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설치
- 수사지원팀은 경제팀 분리·분과 시에 반드시 정식 직제화
- 유치관리팀은 이관 실익이 없으므로 지능과에 배치
- 추적수사팀은 기소증지자 검거 전담을 위해 강화 추진
- 인지수사팀은 지능과와 관계 고려할 때, 신설은 시기상조

⑥ 수사 인프라에서,

-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으로 평가
- 수사 인프라 개선 우선순위는 조사시설->수사장비의 순서

⑦ 교육·연가(정상적 업무 손실)에서,

- 팀별 업무 손실은 경제팀이 지능팀보다 큰 것으로 추정
- 경제팀 1인당 연간 업무 손실(15.2일)은 적정 업무량 산정에 반영

다.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팀장 수사지휘 역할이 강화된 팀 단위 수사체제의 정착을 전제할 때, 적정한 경제팀의 규모에 대하여 앞선 설문조사에서는 4~6명의 소팀제 형태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같은 팀 규모에 대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장들이 실질적 수사지휘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수사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팀 인원을 통솔하는 팀장의 적정 업무량이 추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팀 단위 책임수사의 핵심은 팀장의 역할이며, 따라서 팀장의 가장 적정한 수사지휘 업무량, 또는 통솔 가능한 수사인력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팀 규모를 논할 수 없다.

1) 1인당/팀별 적정 업무량의 이론적 검토

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장을 고려한 적정 팀 규모의 추정에 앞서, 사건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시간 등을 고려한 수사관의 업무량 모형 등 적정 업무량에 대한 이론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경제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은 상담·접수에서부터 본 수사 단계를 거쳐 수사 마무리 조치에 이르기까지 사건 처리에 소요되는 시간 외에,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관의 일정 기간 내 가용 근무시간이 고려되어야 한다.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을 나타내는 기본적인 이론 모형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 식 (1)

단,

$L_y = 1$ 일 기본 근무시간(L_n) \times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bar{h} = \frac{\sum h_i}{N}$, 여기서 h_i = 개별 사건 i 의 처리 소요시간, N =전체 사건 수.

1인당 연간 적정업무량을 나타내는 위의 모형은 경제팀 수사관이 연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기본 근무시간을 1건당 평균 사건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나눈 모형으로서 범죄 유형 등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가장 단순한 이론적 업무량 추정 모형이다.

그러나 업무 현실에서는 범죄 유형과 규모 등 업무의 난이도가 상이한 다양한 유형의 사건들이 있고, 이러한 사건 유형을 고려하여 위의 1인당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을 다시 구성하면,

$$\text{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text{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div \text{1건당 평균 소요시간}(\bar{h}) \quad \text{----- 식 (2)}$$

단, 여기서 \bar{h} 는 사건 유형별 차이가 고려되어

$$\bar{h} = \sum(\text{유형별 건수} \times \text{유형별 평균 소요시간}) \div \sum \text{유형별 건수}$$

로서 산출된다.

$$\text{위의 식에서 } \bar{h} \text{을 다시 써보면, } \bar{h} = \frac{\sum n_i \bar{h}_i}{\sum n_i},$$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bar{h}_i = 유형 i 사건의 평균 소요시간.

위 모형은 식 (1)의 기본 모형과 기본 산식에서 동일하다. ($W_n = L_y \div \bar{h}$) 그러나 \bar{h} 의 산출과정에서 차이가 있다. 즉 기본 모형의 식 (1)은 \bar{h} 을 구할 때, 개별 사건들에 소요되었던 시간을 단순히 모두 더하고($\sum h_i$) 이를 전체 사건(N)으로 나눈 것이다($\bar{h} = \frac{\sum h_i}{N}$). 반면에 식 (2)에서의 \bar{h} 는 사건 유형이 구분되어 있고 그에 따라 각기 상이한 사건 유형별 소요시간을 적용하여 구해진다.¹⁵⁾

나) 경제팀 적정 업무량의 기본 모형

개인별 적정 업무량과 같이 각 경찰관서 경제팀의 경우에도 팀별 인원 수 및 팀의 연간 기본근무시간, 사건 유형 등을 고려하여 그 적정 업무량 모형을 구축할 수 있다.

즉, 수사관 정원(L_p)이 l 명 ($L_p=l$) 인 P경찰서에 A경제팀 (팀원 수= m 명), B경제팀 (팀원 수= $l-m$ 명)으로 두 팀이 편성되었을 경우

A경제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k, j=m}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여기서 n_i = 유형 i 의 사건수, j = 조사관, n_{ij} = 조사관 j 가 담당한 유형 i 사건의 처리 건수, mL_y = A경제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마찬가지로 B경제팀은 $\sum_{i=1, j=m+1}^{i=k, j=l}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m+1}^{i=k, j=l} n_{ij} \bar{h}_i \leq (l-m)L_y$,

여기서 $(l-m)L_y$ = B경제팀 연간 기본 근무시간.

15) 기본모형 중의 식 (2)는 업무 난이도가 반영된 사건유형에 기초하여 적정 업무량이 산출되었다는 점에서 업무배당과 성과측정 등에 합리적이다. 적정 업무량 기본모형의 구축과 확장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34-35쪽;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124-125쪽; 정웅, 윈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

예컨대, 수사관 정원이 9명 ($Lp=9$)인 P경찰서에서 경제팀 전체 인원이 5명($j=5$)인 A경제팀이 6개 유형의 사건을 접수하여 운영할 경우,

A경제팀 적정 업무량(건수)는 $\sum_{i=1, j=1}^{i=6, j=5} n_{ij}$ 이다.

단, 제약조건은 $\sum_{i=1, j=1}^{i=6, j=5} n_{ij} \bar{h}_i \leq 5L_y$ 이다

여기서 $5L_y =$ A경제팀(5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또한,

B경제팀 적정업무량(건수)은 $\sum_{i=1, j=6}^{i=6, j=9} n_{ij}$.

단, 제약조건은 $\sum_{i=1, j=6}^{i=6, j=9} n_{ij} \bar{h}_i \leq 4L_y$,

여기서 $4L_y =$ B경제팀(4명) 연간 기본근무시간.

다) 적정 업무량과 업무배당 준칙

다양한 유형과 난이도를 갖는 사건 발생을 고려할 때, 팀원 간 또는 팀 간 형평성을 갖는 사건 배당 또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배당 준칙을 설정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접수된 사건을 유형에 따라 분류한 후, 사건 유형에 따른 난이도를 고려하여 사건을 경제팀 팀원들에게 균등 배당한다.

$$\sum n_{ia} \bar{h}_i = \sum n_{ib} \bar{h}_i \leq 1 \text{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즉 경제팀 내 수사관(j)으로 a, b 가 근무할 경우, 수사관 간에 유형별 평균처리 소요시간(\bar{h}_i)을 고려한 업무량이 같도록 배당하여야 하며, 또한 개인별 처리소요시간의 합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_y) 이내에서 제한되도록 해야 한다.

경찰서 각 경제팀별 사건배당은, 현재의 운영체제 아래서는 매우 어려우나 사건 처리 업무량의 팀 간 장기적인 형평성 추구하고 인력 재배치 시점에서 본다면, 위의 경제팀별 적정 업무량 기본 모형의 제약조건

$$\sum_{i=1, j=1}^{i=k, j=m} n_{ij} \bar{h}_i \leq mL_y$$
 을 만족하는 업무량 분담 기준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적정 규모 모형

가) 기본 모형(Basic Model)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추정, 그리고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이 고려된 경제팀 적정 규모(업무량) 추정에는 무엇보다 팀장, 팀원의 사건당 처리 소요시간과 근무가능시간 등을 고려한 업무모형 개발이 결정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모형 설계에는 앞선 기본 이론 모형에서 적용되었던 1인당 연간 근무시간(L_y), 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등의 개념과 기본 식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

즉, 식 (1)에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단, $L_y = 1$ 일 기본 근무시간(L_h) × 연간 기본 근무일수(L_d)

여기서, 우선 팀원과 팀장 누구든 관계없이, 수사관으로서 연간 가용한 기본 근무시간(L_y)은 2011~2015년 5년 평균 250일(=2,000시간, 120,000분)¹⁶⁾로 구해진다.

다음으로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은 우선 팀원의 경우(\bar{h}_j), 2012년 연구에 따르면 정식접수 사건의 경우 1308.4분이다.¹⁷⁾

따라서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은 91.7건(정식접수 사건 기준)이다.

$$W_{nj}(91.7\text{건}) = L_y(120000\text{분}) \div \bar{h}_j(1308.4\text{분})$$

한편 책임수사 전제 시에 일반 수사관(팀원)들과 달리 실질적인 수사지휘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경제팀장의 경우는, 같은 정식접수사건에 대해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_a)이 평균 492.7분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은 243.6건(정식접수 사건 기준)이다.

$$W_{na}(243.6\text{건}) = L_y(120000\text{분}) \div \bar{h}_a(492.7\text{분})$$

경제팀의 적정 (인원)규모 모형은 일반적인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모형에,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의 제약 조건 즉, W_{na} (243.6건) = L_y (120000분) \div \bar{h}_a (492.7분)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축할 수 있다.

16) 최근 5년간 연평균 근무시간 2,000시간(L_y) = 1일 8시간(L_h) \times 기본근무일 250일(L_d). 최근 5년간 기본근무일수는 2011년 249일, 2012년 252일, 2013년 249일, 2014년 249일, 2015년 251일로 연평균 250일이었다.

17) 정용,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용,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6.

즉 경제팀의 적정 팀원, 또는 경제팀장의 적정 지휘(통솔) 인원(T_n)=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팀장의 팀원 1인당 수사지휘 시간(\bar{h}_{aj})

단, \bar{h}_{aj}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 × 팀장 1건당 평균 사건 처리 소요시간(\bar{h}_a).

위에 따라, 현시점에서 각 변수들의 추정치들을 고려할 때, 경제팀의 적정 팀원 또는 경제팀장의 적정 통솔 인원(T_n)은 2.66명이다.

$$T_n(2.66\text{명})=L_y(120000\text{분}) \div \bar{h}_{aj}(45180.6\text{분})$$

$$\text{여기서, } \bar{h}_{aj}(45180.6\text{분})= W_{nj}(91.7\text{건}) \times \bar{h}_a(492.7\text{분}).$$

최종적으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 적정 규모는 3.66명(팀장 1명+ 팀원 2.66명)이며, 팀장 중심으로 팀당 연간 처리하는 적정 업무량(W_{na})은 243.6건이다(정식접수 사건 기준).

$$W_{na}(243.6\text{건})= L_y(120000\text{분}) \div \bar{h}_a(492.7\text{분})$$

나) 표준 모형(Standard Model): 업무 손실의 고려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추정, 그리고 경제팀의 적정 인력규모 추정을 위한 기본모형에서는 팀원들의 업무 처리 중 교육과 연가 등으로 인한 업무손실을 가용 근무시간에 고려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다 현실 타당성이 있는 적정인력 산출을 위해 기본모형을 조정한 표준모형(Standard Model)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

즉, 식 (1)을 다시 쓰면, 표준모형에서 수사관 1인당 연간 적정 업무

량(W_n^s) = $L_{yc} \div$ 1건당 평균 사건처리 소요시간(\bar{h}),

단, L_{yc} = 1인당 연간 기본 근무시간(L_y) - 업무손실시간(L_c)

그 중 팀원들의 1인당 연 평균 업무손실 시간($L_{c(j)}$)은 앞서 보듯이 15.147일(7270.6분)으로 조사되었다¹⁸⁾. 정상적인 개인 연가와 직무교육 참석 등으로 실제 근무할 수 없는 시간인 업무손실 시간을 차감하여, 표준모형에서 팀원의 실질적인 연간 가용 시간을 산출하면 $L_{yc(j)} = 234.9$ 일(121.2시간, 112729.4분)으로 재산정 된다.

$$L_{yc(j)}(112729.4\text{분}) = L_y - L_{c(j)}$$

$$L_y = 120000\text{분}, L_{c(j)} = \text{팀원의 연간 업무손실 시간}(7270.6\text{분})$$

그에 따라 표준모형에서의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s)은 86.2건이다(정식접수 사건 기준).

$$W_{nj}^s(86.2\text{건}) = L_{yc(j)}(112729.4) \div \bar{h}_j(1308.4\text{분})$$

한편 표준모형에서의 경제팀장의 연간 적정 업무량(W_{na}^s)은 228.8건이다(정식접수 사건 기준).

$$W_{na}^s(228.8\text{건}) = L_{yc(a)}(112712,1) \div \bar{h}_a(492.7\text{분})$$

단, 경제팀장의 실질적인 연간 가용 시간 $L_{yc(a)}(112712,1) = L_y - L_{c(a)}$

$$L_y = 120000\text{분}, L_{c(a)} = \text{경제팀장의 연간 업무손실 시간}(7287.9\text{분})$$

18) 표준 모형에서 수사관의 2015년 업무손실률은 6.06%(=7270.6분 ÷ 120000분)이다. 업무손실률=업무손실시간÷기본근무시간. 단, 기본근무일은 최근 5년간 연평균(250일) 기준.

표준모형에서의 경제팀의 적정 팀원 규모는 기본 모형에서와 같이 일반 적인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모형에,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모형에서의 제약 조건 즉, $W_{na}^s(228.8\text{건})=L_{yc(a)}(112712.1\text{분}) \div \bar{h}_a(492.7\text{분})$ 을 추가로 고려하여 구축할 수 있다.

즉 표준모형에서 경제팀의 적정 팀원, 또는 경제팀장의 적정 지휘(통솔) 인원(T_n^s)= $L_{yc(a)} \div$ 팀장의 팀원 1인당 평균 수사지휘 시간(\bar{h}_{aj}^s)

단, \bar{h}_{aj}^s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s) \times 팀장 1건당 평균 사건 처리 소요시간(\bar{h}_a).

따라서 팀원의 업무손실을 고려하여 재산정된 각 변수들의 추정치들을 고려할 때, 표준모형에 경제팀의 적정 팀원 또는 경제팀장의 적정 통솔 인원은 2.66명이다. $T_n^s(2.66\text{명})=L_{yc(a)}(112712.1\text{분}) \div \bar{h}_{aj}^s(42470.7\text{분})$

여기서, $\bar{h}_{aj}^s(42470.7\text{분})=W_{nj}^s(86.2\text{건}) \times \bar{h}_a(492.7\text{분})$

최종적으로 표준모형에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 팀당 적정 규모는 3.66명(팀장 1명+ 팀원 2.66명)이며, 이는 기본 모형과 같다. 그 이유는 팀원의 업무손실(7270.6분)과 팀장의 업무손실(7287.9분)이 거의 같은 크기이고 또한 이 값들이 팀원 적정 업무량과 팀장 적정업무량에 각각 동시에 반영되어 팀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만, 업무손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 (W_{nj})은 91.7건에서 86.2건으로 감소하고, 팀장 중심으로 팀당 연간 처리하는 적정 업무량(W_{na})은 243.6건에서 228.8건으로 감소되었다(정식 접수 사건 기준).

다) 확장 모형(Extended Model) 1: 반려사건의 고려

위의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적정 규모 모형과 그에 따른 추정치는 정식접수 사건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정식접수 사건이 아닌, 상담반려 사건의 경우는 초기 상담 평균 46.6분, 피해구제 안내에 평균 35.8분으로 경제팀장의 반려사건 1건당 소요시간은 평균 82.4분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반려사건 처리 소요시간은 정식접수 사건 1308.4분에 비해 적은 것이지만, 반려 사건들도 실제 발생된 건수 및 건당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팀장이 추가로 담당 처리하여야 한다.

최근 경제팀의 연평균 사건수(2014~2015)는 정식접수 518,767건, 반려 사건 144,405건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식접수 1건당 반려건수 비율은 0.28이다. 이것은 정식접수 사건을 1건을 처리할 때, 평균적으로 약 0.28건의 반려 사건이 따라온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32〉 경찰서 경제팀의 반려사건 비율

년도	정식접수 건수(A)	상담반려 건수(B)	반려비율(R)= B/A	합계(A+B)
2014	522,637	151,700	0.29	674,337
2015	514,897	137,110	0.27	652,007
평균	518,767	144,405	0.28	663,172

주: 반려 비율 R은 정식접수 1건 대비 반려 건수.

자료: 경찰청 수사1계, 내부자료, 2016.

따라서, 궁극적으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모형에는, 정식접수 처리되지 않은 업무량, 즉 1팀당 상담반려 사건(W_{nt})= 64.1건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W_{nt}(64.1\text{건}) = W_{na}^s(228.8\text{건}) \times R(0.28)$ 을 처리해야 한다.

여기서, W_{nt} =경제팀 당 정식접수 처리건수 대비 반려사건 수.

한편, 경제팀장의 반려사건 1건당 소요시간(\bar{h}_{at})은 평균 82.4분이다.

따라서 경제팀장이 수행하는 팀당 반려 사건 64.1건에 대한 처리 소요 시간(\bar{h}_t)은 5281.8분이다.

$$\bar{h}_t(5281.8\text{분}) = W_{nt}(64.1\text{건}) \times \bar{h}_{at}(82.4\text{분})$$

궁극적으로 경제팀장의 적정 업무량 모형에는 이처럼 정식접수 처리되지 않은 업무량, 즉 1팀당 상담반려 사건 64.1건(5281.8분)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즉 확장모형의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은 292.1건이다.

$$W_{na}^e(292.9\text{건}) = W_{na}^s(228.8\text{건}) + W_{nt}(64.1\text{건}),$$

단, W_{na}^s 는 정식접수 사건 수, W_{nt} 는 반려 사건 수.

확장모형에서는 표준모형에서 추가된 상담반려 사건 W_{nt} (64.1건)이 있으며, 그에 따라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의 적정 인원(T_n^e)은 정식접수 W_{na}^s (228.8건)을 처리할 T_n^s (2.66명) 외에 상담반려 사건 W_{nt} (64.1건)을 처리할 인력이 추가되어야 한다.

반려사건 64.1건(5281.8분)을 처리할 적정 인원 T_{na} 는 팀장 기준으로 0.047명이다. $T_{na}(0.047\text{명}) = \bar{h}_t(5281.8\text{분}) \div L_{yc(a)}(112712.1\text{분})$

결국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의 적정 팀원(T_n^e)= 2.707명이다.

$$T_n^e(2.707\text{명}) = T_n^s(2.66\text{명}) + T_{na}(0.047\text{명})$$

최종적으로 확장모형에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 적정 규모는 3.707명

(팀장 1명+ 팀원 2.66명+ 반려사건 처리 인원 0.047명)이다.

단, 위 확장모형에서 반려 사건 처리를 위한 추가 인원 0.047명은 팀장이 상담업무를 수행한다고 보고, 팀장의 실질적인 연간 가용 시간 $L_{yc(a)}$ (112712.1분)을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다.

여기서 팀장 대신 팀원이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팀원에 대해 그 실질적 연간 가용 시간 $L_{yc(j)}$ (112729.4분) 및 팀장과 같은 반려 사건 처리시간($\bar{h}_{at}=82.4$ 분)을 적용하면 역시 추가 인원은 0.047명으로 팀장이 담당할 때와 사실상 변동이 없다. 팀장 $L_{yc(a)}$ (112712.1분)와 팀원 $L_{yc(j)}$ (112729.4분)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¹⁹⁾

따라서 확장모형과 같이, 반려 사건들을 별도의 전문적 민원상담팀(센터)에서 처리하지 않고 경제팀 내부에서 모두 처리하도록 운영할 경우에는 팀장과 팀원 역할에 관계없이 T_{na} (0.047명)은 반드시 충원되어야 한다.

다만 확장모형에서 산출된 경제팀 적정 인원 규모 3.707명 중, 반려 사건 64.1건 처리를 위한 0.047명(5281.8분)은, 정식접수 사건에 소진한 팀장 1명의 연간 가용 시간 $L_{yc(a)}$ (112712.1분)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반려 64.1건 처리를 위한 0.047명이 충원되지 못할 경우 이 부분은 팀장 1명이 초과근무를 통해 해소해야 할 것이다.

라) 확장 모형 2: 초과근무의 고려

표준모형에서는 정식접수 사건 처리시간만을 고려하고 현존 수사체제 및 그에 따른 사건접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파생하는 반려사건 처리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19) 팀원에게 팀장과 같은 상담반려 사건 처리 시간($\bar{h}_{at}=82.4$ 분)을 적용하는 것은 팀원 상담 능력이 팀장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적 수준에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팀장이 아닌 팀원에게도 사건 상담을 배정할 경우, 팀원의 전문상담 역량 확보가 요망된다.

그에 따라 반려사건을 고려한 위의 현실적인 확장모형에서는 정식접수 처리되지 않은 업무량, 즉 1팀당 상담반려 사건(W_{nt})= 64.1건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즉 경제팀은 각팀 당 정식접수 처리건수 대비 반려사건 수 W_{nt} (64.1건)= W_{na}^s (228.8건) \times R(0.28)을 추가로 처리해야 하며, 팀당 반려사건 64.1건에 대한 처리 소요 시간(\bar{h}_t)은 경제팀장 기준으로 5281.8분이다.

$$\bar{h}_t(5281.8\text{분})= W_{nt}(64.1\text{건}) \times \bar{h}_{at}(82.4\text{분})$$

이러한 반려사건 64.1건(5281.8분)을 처리할 적정 인원 T_{na} 는 팀장 기준으로 0.047명이다.

$$T_{na}(0.047\text{명})= \bar{h}_t(5281.8\text{분}) \div L_{yc(a)}(112712.1\text{분})$$

결국 반려사건을 고려한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의 적정 팀원(T_n^c)은 앞서 보았듯이 2.707명으로 추정되었다.

$$T_n^c(2.707\text{명})= T_n^s(2.66\text{명})+ T_{na}(0.047\text{명})$$

반려사건의 현실을 고려한 이 같은 확장모형에도 불구하고, 수사 실무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한 면이 있다. 그것은 整數 단위로 수사관을 배치 운용해야하는 현실에서 볼 때 그러하다.

따라서 현실의 실무 세계에서 볼 경우에는, 적정 팀원 수 2.66명(정식접수 사건 기준) 또는 2.707명(반려사건 고려)과 같은 현실과 괴리된 인원 숫자 추정보다는, 근사 적정인원(3명 또는 4명 등)의 확정과 그에 필요한 팀장의 초과근무 시간을 제시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수 있다.

즉, 앞서 표준모형에서 정식접수 사건 기준으로 적정 팀원 수가 2.66명으로 추정되었으나, 현실적으로는 수사관이 3명 또는 4명이 배치될 수

밖에 없으며, 이 때 현장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팀장의 초과근무 시간이 산출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초과근무를 고려한 확장모형을 검토해보면,

우선 표준모형에 경제팀의 적정 팀원 또는 경제팀장의 적정 통솔 인원은 2.66명이었다. $T_n^s(2.66\text{명})=L_{yc(a)}(112712.1) \div \bar{h}_{aj}^s(42470.7\text{분})$

여기서, $\bar{h}_{aj}^s(42470.7\text{분})=W_{nj}^s(86.2\text{건}) \times \bar{h}_a(492.7\text{분})$

그러나 현실적으로 3명의 수사관이 배치되었을 경우($T_n^s=3\text{명}$), 팀장의 경제팀장의 연간 업무시간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T_n^s=L_{yc(a)} \div \bar{h}_{aj}^s$ 를 $L_{yc(a)}$ 에 대하여 식을 변형하면,

$$L_{yc(a)+t(i)}=T_n^s \times \bar{h}_{aj}^s$$

단, $L_{yc(a)+t(i)}$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팀원이 i 명일 경우 팀장의 연간 필요근무 시간.

당초 표준모형에서 팀장의 실질적인 연간 가용 시간, $L_{yc(a)}$ 는 112712.1분이었으나, $T_n^s=3\text{명}$ 으로 배치될 경우, $\bar{h}_{aj}^s=42470.7\text{분}$ 이므로,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L_{yc(a)+t(3)}=127412.7\text{분}(=3\text{명} \times 42470.7\text{분})$ 이 된다.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L_{yc(a)+t(3)}$ 은 127412.7분으로서, 팀장은 당초 표준모형 $L_{yc(a)}$ (112712.1분)보다 많은 연간 14700.6분(245.01시간)을 초과근무 해야 한다. 경제팀장의 연간 업무손실 일수는 평균 15.183일이므로 최근 5년간 연평균 기본근무일수 250일에서 손실일 15일을 차감하면 실제 근무일은 약 235일로서, 초과근무 245시간을 235일로 나

누면 1일 평균 1.04시간(62.6분)의 초과근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편 팀원 3명 배치 시에 경제팀장의 정식접수 사건 업무량($W_{na}^{t(3)}$)은, 표준모형에서 팀원 1인당 연간 업무량(W_{nj}^s)= 86.2건(정식접수 사건 기준)으로부터 258.6건(=86.2건×3명)이 된다.

이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장의 업무량($W_{na}^{t(3)}$)은 표준모형에서의 경제팀장의 연간 적정 업무량(W_{na}^s) 228.8건 보다 약 30건이 많다(정식접수 사건 기준).

더 나아가, 초과근무를 통해 정식접수 사건 업무량이 늘면, 별도의 수사민원상담팀 등에서 반려사건이 걸리지 않는 한, 해당 경제팀이 늘어난 반려사건 역시 담당해야 한다.

즉 $W_{nt(3)}(72.4\text{건})= W_{na}^{t(3)}(258.6\text{건}) \times R(0.28)$ 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반려사건 확장모형에서 $W_{nt}(64.1\text{건})= W_{na}^s(228.8\text{건}) \times R(0.28)$ 보다도 8.3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장의 업무량에는, 이처럼 초과근무 후 늘어난 상담반려 사건 72.4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팀원 3명일 경우, 초과근무 확장모형의 경제팀장 업무량($W_{na}^{e+t(3)}$)은 331건이다.

$$W_{na}^{e+t(3)}(331\text{건})= W_{na}^{t(3)}(258.6\text{건})+ W_{nt(3)}(72.4\text{건}),$$

단, $W_{na}^{e+t(i)}$ 은 팀원이 i 명일 경우 경제팀장 업무량, $W_{na}^{t(i)}$ 는 팀원 i 명일 경우 정식접수 사건 수, $W_{nt(i)}$ 는 팀원 i 명일 경우 정식접수 처리 건수 대비 반려 사건 수.

4명의 수사관이 배치되었을 경우($T_n^s=4$ 명), 경제팀장의 연간 필요 근무시간, 필요 초과근무시간, 경제팀의 업무량 역시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산출될 수 있다.

우선 경제팀장의 연간 필요 근무시간 $L_{yc(a)+t(4)}$ 은 169882.8분(=4명×42470.7분)이 된다.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팀원 4명 배치 시 $L_{yc(a)+t(4)}$ 은 169882.8분으로서, 팀장은 당초 표준모형 $L_{yc(a)}$ (112712.1분)에 더하여 연간 57170.7분(952.85시간)을 초과근무 해야 한다. 경제팀장의 연간 업무손실일 평균 15일을 차감하면 1일 평균 4.05시간(243.3분)의 초과근무를 필요로 하게 된다.

한편 팀원 4명 배치 시 경제팀장의 업무량은,

표준모형에서 팀원 1인당 연간 업무량(W_{nj}^s) 86.2건(정식접수 사건 기준)으로부터 344.8건(=86.2건×4명)이 된다.

이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경제팀장 업무량($W_{na}^{t(4)}$)은 표준모형에서의 경제팀장의 연간 적정 업무량(W_{na}^s) 228.8건 보다 약 116건이 많다(정식접수 사건 기준).

더 나아가, 초과근무를 통해 정식접수 사건 업무량이 늘면, 별도의 수사민원상담팀 등에서 반려사건이 걸러지지 않는 한, 해당 경제팀이 추가된 반려사건 역시 담당해야 한다.

즉 $W_{nt(4)}(96.5\text{건})= W_{na}^{t(4)}(344.8\text{건}) \times R(0.28)$ 을 처리해야 한다.

이는 반려사건 확장모형에서 $W_{nt}(64.1\text{건})= W_{na}^s(228.8\text{건}) \times R(0.28)$ 보다도 32.4건을 더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

궁극적으로 초과근무 확장모형에서 팀원 4명이 배치된 경제팀에서 팀장의 업무량에는, 이처럼 초과근무 후 늘어난 상담반려 사건 96.5건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그에 따라 팀원 4명일 경우, 초과근무 확장모형의 경제팀장 업무량 ($W_{na}^{e+t(4)}$)은 441.3건이다.

$$W_{na}^{e+t(4)}(441.3\text{건}) = W_{na}^{t(4)}(344.8\text{건}) + W_{nt(4)}(96.5\text{건})$$

제3장 경제팀 수사체제의 개선방안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체제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한 본 연구의 조사 설계에서는, 수사관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팀 확대의 방향성을 가늠해보고, 향후 경제팀의 적정 팀 규모 및 업무분장, 분리·분과된 경제범죄수사과의 규모와 팀 배치 등 조직 및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사체제의 개편 내용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설계에 따라 진행된 조사와 분석, 그리고 개선안 모색의 결과는 아래 <표>에 보는 바와 같이 크게 “1. 운영성과 분석”, “2. 수사체제 분석”, “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 추정”의 세 범주에서 요약 정리될 수 있다.

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표 3-1> 운영성과 분석 결과 및 시사점

분석요소	세부 지표 및 성과 내용	시사점
책임수사	- 팀 단위 수사: 보통 이상 값,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팀 운영의 유지
	- 팀장 수사지휘: 보통 이상 값,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팀 운영의 유지
적극수사	- 추적 수사: 보통 이상 값,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팀 운영의 유지
	- 인지 수사: 보통 이하 값, 부정적으로 평가	인지 수사 再考
수사역량	- 전문상담제: 보통 이상 값,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팀 운영의 유지
	- 사건보유량: 적정 이상 건수, 과다 보유 평가	보유 건수의 감축
수사만족도	- 국민 만족도: 보통 이상 값, 긍정적으로 평가	경제팀 운영의 유지
	- 경제팀·지능팀 간 업무 만족도 비교: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진다고 평가 - 수사관 업무 만족도: 분과서 경제팀이 미분과서 경제팀보다 만족도가 높음. 지능팀 경우도 동일	팀 간 만족도의 차이로 갈등 소지도 있으나, 분과서 팀의 만족도가 높아, 팀 분과가 타당
종합	<p>- 팀 단위 수사, 팀장 수사지휘, 추적 수사, 전문상담제, 국민 만족도 지표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어 경제팀의 지속적 운영의 타당성 시사. 단, 인지 수사 부서로 발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이며, 1인당 사건보유 건수는 감축을 통한 개선 시사</p> <p>- 경제과 경제팀이 수사과 경제팀에 비해 팀 단위 수사, 팀장 수사지휘, 전문상담제, 경제팀 수사업무 만족도 등 지표가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팀의 분리 분과에 대한 타당성을 시사. 단, 경제팀·지능팀은 자신보다 상대방이 더 높은 만족도를 가질 것으로 평가하여 팀 간 갈등 소지가 있으나, 분과서의 업무만족도가 미분과 경제팀 및 지능팀의 업무 불만 상태를 극복하고 있어, 분과 운영 과정에서 팀 내 불만과 부서 간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p>	

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표 3-2〉 수사체제 분석 결과 및 착안점

분석 요소	세부 지표 및 분석 내용	조직 및 운영개선 착안점
경제팀 편제	- 경제·지능 분리 구조: 경제·지능팀 구분 여부	팀 구분 유지
	- 경제팀 편제 기준: 최종별 편제 여부	최종별 편제 유지
경제팀 규모	- 팀 적정 규모: 팀 단위 수사체제 정착 시, 적정 인원 규모에 대한 설문 조사 - 계량모형을 통한 추정, 확장모형= 업무손실 및 반려사건 포함한 모형	4~6명(소팀제) 확장모형 추정= 팀장포함 3,707명
	- 팀장 적정 업무량: 수사지휘 역할 강화 시, 팀장의 적정 업무량(W_{na}^s) 추정	확장모형, 연 292.9건
경제팀 업무 분장	- 분장 기준: 경제·지능팀 간 단서별 기준	단서별 원칙 도입
	- 탄력적 운용: 단서별 원칙의 예외적 운용 여부	탄력적 운용 병행
	- 신종 범죄: 신종 수법 및 범죄에 대한 분장	본청에서 결정
경제팀 분리, 분과	- 팀 분리·분과: 경제팀의 분리 독립, 분과 타당성	경제과 신설 추진
	- 경제과 설치 시 적정 규모: 설문조사 결과, 최소값=30명, 최대값=50명	적정 규모=40명 내외
경제과 각종 팀배치	- 수사민원상담팀: 별도 민원상담팀 설치 필요성	반드시 설치
	- 수사지원팀: 사무의 정식 직제화 필요성	반드시 직제화
	- 유치관리팀: 지능과에서 경제과로 이관 필요성	이관 배치 불필요
	- 추적수사팀: 기소중지자 검거팀 강화 필요성	검거전담팀 강화
	- 기획수사팀: 외근·인지수사 전담팀 설치 필요성	신설은 시기상조
수사 인프라	- 수사 인프라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조사 - 우선순위(조사시설, 수사장비, 전산시스템) 조사	개선필요도 높고, 시설 → 장비 순
교육· 연가	- 경제팀 1인당 연간 업무 손실(L_c)=15.2일 - 경제팀 L_c 이 지능팀 L_c (13.3일) 보다 큼	업무 손실은 표준모형에 반영, 업무량 재산정

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표 3-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의 추정 결과

모형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경제팀 적정 규모
① 기본모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 = 91.7건. -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 = 243.6건. (이상 정식접수 사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팀 적정 팀원=경제팀장의 적정 통솔 인원(T_n) = 2.66명. - 최종적으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당 적정 인원 규모는 3.66명 (팀장 1명+팀원 2.66명).
② 표준모형: 업무손실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s) = 86.2건(업무손실 고려). -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s) = 연 228.8건. - 업무손실이 반영되어 팀원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j})은 91.7건에서 86.2건으로 감소하고,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은 243.6건에서 228.8건으로 감소(정식접수 사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팀 적정 팀원=경제팀장의 적정 통솔 인원(T_n^s) = 2.66명. - 최종적으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당 적정 규모는 3.66명 (팀장 1명+팀원 2.66명). - 위 규모 값은 기본 모형과 같다. 이유는 팀원 업무손실(7270.6분)과 팀장의 업무손실(7287.9분)이 거의 같고, 또한 손실 값들이 팀원과 팀장에 동시에 반영되어 팀 규모에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
③ 확장모형: 반려사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식접수 외에 상담반려 사건(W_{nt}) = 64.1건까지 포함하여 확장. -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e) = 292.9건 = W_{na}^s (228.8건) + W_{nt} (64.1건). 단, W_{na}^s는 정식접수 사건 수, W_{nt}는 반려사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려사건 64.1건을 처리할 적정 인원(T_{na})는 팀장 기준 0.047명. - 경제팀 적정 팀원(T_n^e) = 2.707명 = T_n^s (2.66명) + T_{na} (0.047명) - 최종적으로 팀장을 포함한 경제팀당 적정 규모는 3.707명 (팀장 1명+팀원 2.66명+반려사건 처리 인원 0.047명). - 팀원이 상담하는 경우에도 T_{na}은 0.047명으로 팀장과 동일. - 따라서 반려 사건을 경제팀 내부에서 모두 처리할 경우, 팀장/팀원에 관계없이 T_{na} (0.047명)은 반드시 총원되어야 함. - 단, 0.047명은, 정식접수 사건에 이미 소진된 연간 가용 시간을 넘어선 부분이기 때문에, 초과근무를 통해서 해소되어야 함.

모형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경제팀 적정 규모
④ 확장모형2: 초과근무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을 整數 단위로 배치하는 현실에서 근사 적정인원(3명 또는 4명) 및 그에 필요한 팀장의 초과근무 시간을 고려. - 팀원 4명일 경우, 팀장 1인당 연간 적정 업무량($W_{na}^{c+t(4)}$)= 441.3건 = $W_{na}^{t(4)}$ (344.8건) + $W_{nt(4)}$ (96.5건), 단, $W_{na}^{t(4)}$는 정식접수 사건 수, $W_{nt(4)}$는 반려 사건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사관 4명 배치 시, 팀장의 연간 필요 근무시간=$L_{yc(a)+t(4)}$은 169882.8분 (=4명×42470.7분). - 그 결과, 팀장은 표준모형에서 근무시간= $L_{yc(a)}$(112712.1분) 외에, 연간 57170.7분(952.85시간) 초과근무 필요. - 경제팀장의 연 평균 업무손실일 15일을 차감하면(연 235일 근무), 1일 평균 필요초과근무 시간은 4.05시간(243.3분).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 추정의 경우는 ① 기본모형에서부터 시작하여, ② 수사관들의 업무손실이 고려된 표준모형이 구축되고, ③ 여기에 반려사건 업무량까지 고려한 확장모형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현실에 가까운 모형을 모색하였다.

더 나아가 모형의 실무적 운용을 위하여 ④ 근사 적정 인원의 선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초과근무를 고려한 확장모형이 개발됨으로 모형의 정책적 이행가능성(feasibility)을 제고하였다.

4.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방안의 도출

이러한 “1. 운영성과 분석”, “2. 수사체제 분석”, “3. 경제팀장 적정 업무량 및 팀 규모 추정” 결과를 토대로, 책임수사를 전제로 한 경찰서 경제팀의 수사체제 개선안을 도출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현 경제팀은 긍정적 운영성과에서 보듯이 향후 지속적인 팀 운영 확대 및 경제과 분과로 그 추진 방향을 잡고,
- ② 팀 편제는, 경제팀·지능팀 간에는 현재와 같이 팀 간 구분을 유지 하되, 경제팀 내에서는 최종별 편제를 유지하며,
- ③ 경제팀 규모는, 4~6명의 소팀제로 편성토록 한다.

※ 팀 적정 규모(표준 모형)=

팀장 포함 3.707명, 팀장 적정 업무량= 연 292.9건

※ 팀장 포함 5명(팀장 1명+팀원 4명) 규모의 팀 운영 시,

팀장 1일 평균 4시간 초과근무로 운영 가능.

5명 팀제에서 팀장 업무량= 연 441.3건.

- ④ 업무 분장은, 경제팀·지능팀 간에는 단서별 업무 분장 기준을 도입하되,
 - 예외적 운용 등, 탄력적인 운용을 반드시 병행하고,
 - 신종 수법/범죄의 경우는 본청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 ⑤ 경제팀 분리·분과 시, 신설 경제과 적정 규모는 40명 내외로 하며,
- ⑥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는,

- 민원상담팀 및 수사지원팀은 반드시 설치하고
- 추적수사팀은 기소중지자 검거 전담을 위해 강화토록 하되,
- 유치관리팀은 지능과에 배치토록 한다.

※ 인지수사팀은 지능과와 관계를 고려할 때, 신설은 시기상조

- ⑦ 수사 인프라는, 현재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로 평가되며,
개선 우선순위는 조사시설 → 수사장비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제4장 결 론

본 연구는, 일선 수사관들이 실제 체감하는 경제팀 운영성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경제팀 확대의 방향성을 검토해보고, 향후 경제팀의 적정 팀 규모 및 업무분장, 분리·분과된 경제범죄수사과의 팀 배치 등 조직 및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새로운 수사체제의 개편 내용을 도출하였다.

경제팀 수사체제의 개선방안을 전체적으로 다시 요약해 보면,

- ① 개선기조는, 그간 경제팀의 긍정적 운영성과를 반영하여 향후에도 지속적인 팀 운영 확대 및 경제과 분과로 방향성을 잡고,
- ② 팀 편제는, 현재와 같이 경제팀·지능팀 간 구분을 유지하되, 경제팀 내에서는 최종별 편제를 유지하며,
- ③ 경제팀 규모는, 소팀제(4~6명)를 지향하되 구체적으로는 팀장의 초과근무(1일 평균 4시간)를 전제로, 팀장 포함 5명(팀장 1명+팀원 4명)인 팀 편제를 기본 체제로 운영한다(5명 팀제에서 팀장 업무량은 연 441.3건=정식 344.8건+반려 96.5건).
- ④ 업무 분장은, 경제팀·지능팀 간에는 단서별 업무 분장 기준을 도입하되, 예외적 운용 등 탄력적인 운용을 반드시 병행하고, 신중 수법/범죄의 경우는 본청에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 ⑤ 경제팀의 분리·분과 시, 신설되는 경제과 적정 규모는 40명 내외로 한다. 분과 후 과원이 80명 초과하는 경우에는 경제과만의 단순 재분과 보다는 지능 외에도 형사를 포함한 전체 수사조직의 재설계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수사1. 2과 형태의 단순 분과는 각 분과 내 지원팀(서무) 중복 등 낭비를 초래할 수 있는바,

그보다는 경제·지능·사이버·과학수사·유치관리·강력·형사·추적수사·수지지원 등 각종 수사기능들이 “수사 자체” 업무 및 “수사 지원” 업무의 큰 틀 속에서 재설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⑥ 경제과 내 각종 팀 배치는, 민원상담팀 및 수사지원팀은 반드시 설치하고, 추적수사팀은 기소중지자 검거 전담을 위해 강화토록 하되, 유치관리팀은 기존처럼 지능과에 배치토록 한다. 인지수사팀의 신설은 지능과와 관계를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 ⑦ 수사 인프라는, 그 개선 필요성이 현재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개선 우선순위는 조사시설 → 수사장비의 순서가 되어야 한다.

<표 4-1> 경찰서 경제팀 수사체제 개선안

개선 요소	세부 내용	비고
개선 기초	경제팀 운영 지속 및 분리·분과 추진	긍정적 운영성과
팀 편제	경제·지능팀 간 분리 구조 유지 경제팀 내에서는 죄종별 편제 유지	수사 전문성 추구
경제팀 규모	팀 단위 수사체제 정착 시, 팀 적정 인원 규모: 4~6명(소팀제)	팀장의 수사지휘 역할 강화
	반려사건 고려 시(확장모형 1), 팀 적정 규모는 팀장 포함 3,707명. 팀장 적정 업무량은 연 292.9건	연 292.9건= 정식 228.8건+ 반려 64.1건
	초과근무 고려 시(확장모형 2), 팀 규모 5명(팀장 1+팀원 4)일 경우, 팀장 업무량은 연 441.3건	연 441.3건= 정식 344.8건+ 반려 96.5건
경제팀 업무 분장	경제·지능팀 간 단서별 기준 도입	단서별 분장 원칙
	예외적 운용 등 탄력적 운용 병행	병행 운용 필수
	신종 수법 및 범죄의 분장은 본청이 결정	본청 지침 기준
경제과 규모	경제과 신설 시, 적정 규모는 40명 내외	1, 2과 형태의 단순 분과는 지원팀(서무) 중복 등 낭비
	과원이 80명 초과하는 경우, 단순 분과 보다는 지능+형사를 포함한 수사조직 전체 재설계 필요	
경제과 각종 팀배치	수사민원상담팀 설치	설치 필수
	수사지원팀(서무)은 정식 직제화	정식 직제화 필수
	유치관리팀은 지능과에 배치	이관 불필요
	추적수사팀은 기존 역할 보다 강화	검거전담팀 강화
	기획수사팀은 지능과의 관계를 고려, 신설 보류	신설은 시기상조
수사 인프라	인프라 개선 필요성이 상당히 높은 단계에 있고,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은 조사시설	조사시설 -> 수사장비 -> 전산시스템 순

참고문헌

I. 국내문헌

1. 단행본

이운 외, 경찰수사론, 경찰대학, 2012.

정웅,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2.

정웅, 관악서 시범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직무분석(연구보고서), 경찰청
미간행 보고, 2013. 9.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 개발(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2014a.

정웅, 경찰의 보험범죄 대응실태와 수사역량 제고방안(연구보고서), 치안
정책연구소, 2014b.

주학중 편,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92.

2. 논문 및 기타

경찰청 수사국, “경제팀장 역할강화 시범운영 계획(내부자료)”, 2016.

정웅, “경찰서 경제팀 적정 업무량 분석”, 치안정책연구, 제27권 제1호, 2013.

정웅, “성폭력 전담수사팀의 업무량 분석과 적정 업무모형: 강력팀과의
비교”, 치안정책연구, 제28권 제1호, 2014.

정웅, “원스톱 지원센터 여성경찰관의 피해자 조사 업무량 분석”, 치안 정책연구, 제29권 제1호, 2015.

II. 외국 문헌

1. 단행본

Eide, Erling, Rubin, Paul H., and Shepherd, Joanna M., *Economics of Crime*, Hanover: now Publishers Inc., 2006.

Pickett, K.H. Spencer and Pickett, Jennifer M., *Financial Crime Investigation and Control*,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2002.

Winter H., *The Economics of Crime: An introduction to rational crime analysis*, New York: Routledge, 2008.

2. 논문 및 기타

Becker, Gary G.,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1968.

Ehrlich, Isaac, “Participation in Illegitimate Activities: a Theoretical and Empirical Investigation”, *Th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81, No. 3, 1973.

Petter, Gottschalk, “Categories of financial crime”, *Journal of Financial Crime*, Vol. 17, Issue 4, 2010.

Sjoquist, D. L., “Property Crime and Economic Behavior: Some Empirical Result”,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63, No. 3, 1973.

Svensson, J., “Eight Questions about Corrup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9, No. 3, 2005.

